

II.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1. 열강의 이권쟁탈상
2. 독립협회 전후 일제의 이권강점
3. 이권수호운동

II.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1. 열강의 이권쟁탈상

1894년 청일전쟁 이후 한국에 대한 열강의 동향은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한반도에서 물러가게 되면서 일본에 의해 독점체제가 구축되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강제로 〈暫定合同條款〉을 맺어 전선·철도·광산이권을 장악할 수 있는 권리를 잠정적으로 획득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독주에 대해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삼국간섭으로 열강의 견제가 심해지고, 을미사변으로 인해 일본의 정치적 입지가 한동안 위축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러·일의 각축 상황으로 전화되어 갔다. 특히 1896년 아관파천으로 주도권을 잡게 된 러시아는 한국의 국왕이 자국 공사관에 파천해 있는 동안 한국정부의 인사와 정책에까지 간섭이 용이하게 되자 많은 경제적 이권을 획득하였다. 이에 구미 열강도 기회균등을 주장하여 러시아의 불간섭과 묵인하에 수많은 이권을 차지했으며, 일본도 구미 열강으로부터 여러 이권을 전매하는 형식으로 이를 획득하였다. 그 결과 1896년부터 98년까지 불과 3년 동안 근대적 시설과 자원개발을 위한 주요 이권들이 아주 값싼 조건으로 열강의 손으로 넘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권들을 열강이 차지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항 이후부터 줄곧 한국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데 기인한다.

이권 획득의 양상은 열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이익 균점을 내세우며 광산·철도·전선·삼림·어업 등 각 분야에 걸쳐 중요한 이권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혹은 외교적 수완을 동원하였고 동시에 불법 침탈을 감행하여 한국에 대한 주권 침해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정상적인 경제 성장을 지연시켰을 뿐 아니라 국제관계상 한국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1) 미국의 이권쟁탈상

(1) 광산이권

개항후 일본의 정치적·경제적 침투와 청의 내정간섭으로 국내 정세가 불안했던 한국은 이들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원하고 있었다. 이 때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미국에 대해 한국정부는 각별한 호의와 정치적 협조를 기대하였고, 그 결과 구미 열강 가운데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특히 1884년 내한하여 선교사로, 의사로, 외교관으로 활약하였던 미국인 알렌(Horace N. Allen, 安連)은 고종의 각별한 총애를 받고 있으면서 雲山金鑛 채굴권·경인철도 부설권·전기 가설권 등 주요 이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먼저, 금광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조약을 맺은 거의 모든 열강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 까닭은 첫째로 한국에 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소문이 오래 전부터 널리 퍼져 있었고, 둘째로 금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무역의 결제수단과 화폐발행의 준비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광산개발은 대규모의 자본과 고도의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의 경우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불모지와 다름없었다.¹⁾ 이러한 금광이권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획득한 운산금광의 채굴권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雲山鑛約의 내용이 본보기가 되어 다른 열강도 그것을 토대로 채굴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운산금광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도 알렌의 역할이 매우 컸다. 갑신정변 당시 부상당한 閔妃의 조카 閔泳翊을 치료해 준 인연으로 고종과 민비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알렌은 이후 궁중에 자주 드나들면서 고종의 侍醫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문제의 자문에도 응하고 있었다. 이미 1883년 5월에 부임한 초대 공사 푸트(Lucius H. Foote, 福德)이래 한국의 광산에 대해 많은

1) 李培鎔, 《韓國近代鑛業侵奪史研究》(一潮閣, 1989), 1쪽.

관심을 갖고 있었던 미국은 마침 1887년 고종으로부터 한국의 막대한 부채와 열강의 정치적 간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고종의 내심은 미국의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것이었다.²⁾ 즉 1880년대 초기부터 미국이 갖고 있던 한국 광산에 대한 관심은 이미 실질적인 탐사와 더불어 다른 나라보다 앞서 광산개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게 된 것이 한국왕실과 맺고 있었던 친밀한 관계였다.

이에 알렌은 즉시 금광이권을 미국상사에게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며 금의 매장량이 가장 많기로 소문난 평안도 운산금광의 독점적 개발권을 줄 것을 제안하였다. 물론 미국과 정치적·경제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광산이권을 허가해 달라는 알렌의 제의에 고종은 흔쾌히 수락하였지만, 당시 한국의 국내사정은 고종 자신이 마음대로 외국에 이권을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게다가 자본가의 물색도 수월치 않자, 결국 차선책으로 알렌은 고종에게 우선 광산개발은 한국정부에서 직접 주관하고 근대식 기술을 습득한 미국인 광산 기술자를 뽑아 보낼 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종은 금광이권을 미국에게 넘기면 미국이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알렌의 기만에 넘어갔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³⁾

그리하여 알렌의 주선으로 1888년 피어스(Aillerd Ide Pierce, 皮於瑞)가 鑛務局에 고용되어 운산금광에서 1년 동안 채굴작업에 종사하였다.⁴⁾ 다음 해에는 비록 문서 전달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다시 5명의 미국인 광산 기술자와 근대식 채광기계가 도입되어 운산금광으로 보내졌는데,⁵⁾ 이렇

2) Allen to Everett, Microfilm 365, July 2, 1887, *Horace N. Allen Paper*(韓國研究院 소장, 마이크로필름)

3) 李培鎔, 앞의 책, 63~64쪽.

4) Spencer J. Palmer, ed, "Dinsmore to Secretary of State", No. 196, August 16, 1889,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2(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5) 이 5명의 미국인 鑛師 초빙문제는 알렌의 착오였다고 한다. 즉 한국정부는 알렌에게 5명의 광산기술자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One Machinist foreman' 즉 鑛山技師長 1명이라 한 것을 알렌은 'One Machinist four men'으로 알아듣고 5명의 광사를 보내 한국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된 것이라 한다(F. H. 해링튼 著, 李光麟 譯, 《開化期の 韓美關係》, 一潮閣, 1973, 147쪽).

듯 미국은 간접적이거나 운산금광 개발과 정보탐지에 적극적이었다. 모든 근대식 기술이 운산에 보급되어, 근대식 채광법은 한국 광산 중 최초로 운산금광에서 실행되었다. 이것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한국정부측의 광업 근대화 의도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미국측의 운산금광 개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미국은 운산금광 개발권을 부여하겠다는 한국왕실의 언질을 받고 그 후 鑛師를 파견하였던 것인데, 실제로 초빙된 광사들은 한국광산의 근대화를 위해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앞으로 미국이 운산금광 개발에 착수하기 위한 예비조사로서 그들의 업무에 비중을 두었던 것이다.

그런 동안 알렌은 계속 자본가를 물색하던 중 일본의 요코하마(橫濱)에서 무역 활동을 하고 있는 모오스(J. R. Morse, 毛於時)를 적임자로 선정하여 드디어 1895년 7월 고종의 특명으로 운산금광 채굴 계약이 성립되었다.⁶⁾ 그러나 곧이어 발생하는 을미사변으로 권리만 확보해 놓았지 별다른 광업개발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듬해 1896년 4월 정식으로 운산금광 특허권이 한국의 외부대신 李完用과 미국인 모오스 사이에 재조인되었다.

그 내용 속에는 채굴기한을 25년으로 하는 한편 주식의 4분의 1을 한국왕실이 소유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또한 광업에 필요한 기계와 소용물에는 일체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모오스는 朝鮮鑛業會社를 설립하여 막상 채굴에 착수하려 하고 또 그 자신 한국의 경인철도 이권과 광산이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자본이 취약하여 적극적인 개발을 할 수 없었다. 결국 모오스는 뉴욕의 유력한 자본가인 헌트(Leigh S. J. Hunt)와 파세트(J. Sloat Fasset)에게 1897년 3만 불에 양도하게 되었다.⁷⁾ 헌트와 파세트는 버지니아州에서 영국의 자본까지 포섭하여 총 자본금 500만 불을 모아 東洋鑛業開發株式會社(Oriental Consolidated Mining Company)를 조직하여 대대적으로 운산금광 개발에 착수하였다.⁸⁾ 모오스의 조

6) 《奎章閣契約文書》(奎 23183), 〈雲山鑛約草案〉.

李培鎔, 앞의 책, 75쪽 및 附錄 참조.

7) 철도이권은 일본에게 넘겨주고 있다.

田保橋潔, 〈國際關係上の朝鮮鐵道利權〉(《歷史地理》57-4, 1931), 2쪽.

8) Oriental Consolidated Mining Co, Certificate, May 13, 1898.

선광업회사에 비하면 자본금만도 50배나 되는 큰 조직이었다. 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곧 채광에 착수하였고 조선광업회사를 완전히 인수한 것은 1898년 5월 18일이었다.

운산금광이 계속 호조를 보이자 헛트는 한국왕실과 공동소유가 아닌 미국인 단독으로 경영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1899년, 4분의 1의 주식에 대해 10만 불을 한국왕실에 지불하여 모두 사버리고 세금으로 매년 25,000원을 상납하게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900년에는 매년 상납금을 내는 대신 일시불로 12,500불을 지불하고 계약기간도 15년을 더 연장하여 1939년 3월 27일까지로 하였다.⁹⁾ 운산금광은 노다지금광으로 유명한테 미국인들이 경영하면서 매우 많이 금이 쏟아져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운산일대의 주민들이 미국인 금광회사의 철조망으로 모여들자 이를 제지하려는 미국인들이 ‘노터치(Notouch-손대지 말라)’를 연발하자 ‘노다지’로 알고두고 이후에는 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 ‘노다지’로 통용되었던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게 운산금광을 넘겨줄 때는 미국으로 하여금 경제적 관심을 갖게함과 아울러 국제적 갈등속에서 정치적으로 한국에 대한 원조를 구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말하자면 한국정부는 미국이 열강의 침략을 저지시켜 주리라는 기대하에서 이권을 넘겨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종일관 미국은 정치적 불개입의 입장을 견지하고 경제적 이권만을 얻는 데 관심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익과 관계되는 일에는 한국측의 입장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심지어 한국정부의 인사문제에까지 간섭하였다.

운산금광에서 약 40년간 채굴을 담당하였던 동양광업개발주식회사의 경영진에는 한사람의 한국인도 참여시킴이 없이 미국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금광에서 총 900만 톤의 금광석을 생산하여 총 5,600만 불의 산출고를 올렸다. 또한 1909년에는 운산 및 그 부근의 삼림 채벌권까지 획득하여 더욱 더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총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9) 《奎章閣契約文書》(奎 23194), 〈雲山鑛約改定件〉.

이와 더불어 추후 광산시설이 확장되어 더 많은 기간이 요구된다고 인정될 때는 15년을 추가하여 1954년 3월 27일까지 채굴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었다.

1,500만 불이었으니 쉽게 생각해서 4분의 1의 왕실 소유주를 일찌감치 단 10만 불에 팔아 넘기지 않았으면 한국왕실이 375만 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여하튼 이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실로 막대하여 민족자본의 형성 기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철도이권

京仁·京釜·京義 등 각 철도의 부설권은 차례로 일본에 의해 장악되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철도를 둘러싼 이권 각축은 이미 영국·프랑스·독일·미국·러시아·일본 등에 의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상의 여러 철도는 그 성립 배경과 법률적 소유관계를 서로 달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상에도 각각 다른 특색을 갖고 있었다.¹⁰⁾

미국은 모오스가 알렌의 도움을 받아 경인철도의 이권을 얻어내고 있었다. 알렌은 일찍부터 한국의 철도에 관심을 갖고 부설권을 미국인 자본가에게 얻어주려 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청나라에 의해, 뒤에는 일본의 항의로 이를 수 없었다. 아관파천 이후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자 알렌은 즉각 고종에게 경인철도 부설권을 요구하여 1896년 3월 모오스와 정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¹¹⁾

13개조로 되어 있는 경인철도 허가서는 뒤에 다른 열강에게 양여한 철도이권, 이를테면 경부·경의철도 부설 계약의 기초가 되었다. 즉 주요 내용은 제5조에 “철도의 공사용·운전용 재료의 도입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철도에서 생기는 수입 및 회사의 재산에도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제7조에 “이 회사는 계약을 체결하여 노선의 건설·소유·보존 및 운전에 요하는 모든 재산을 소유·양도·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1조에는 “본 철도가 완성된 후 15년이 경과했을 경우, 한국정부가 본 철도의 재산을 당시의 시가로 매수할 수 있다. 만일 매수할 수 없을 때는 본 허가는 다시 10년

10) 鄭在貞, 〈韓末·日帝初期(1905~1916년) 鐵道運輸의 植民地的 性格(上)－京釜·京義鐵道를 中心으로〉(《韓國學報》28, 1982), 119쪽.

11) 朝鮮鐵道史編纂委員會, 《朝鮮鐵道史》1(朝鮮總督府 鐵道局, 1937), 43~49쪽.

간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로 볼 때 모오스는 헐값으로 부설 용지를 매수하고 철도용 자재의 수입을 면세받는 등 크게 혜택을 받고도¹²⁾ 앞으로 15년이란 긴 기간에 걸쳐 경인철도를 독점하게 되었다. 게다가 한국정부가 재정이 궁핍함을 알고 다시 10년을 재보장받는 단서를 붙였던 것이다.

모오스는 경인철도 부설권을 얻은 뒤 친구인 미국인 타운센드(W. D. Townsend, 陀雲仙)와 함께 韓國開發會社(Korea Development Co.)를 설립하고 콜브란(A. H. Collbran, 骨佛安)을 기사장으로 하여 선로의 측량을 완료하였다. 이듬해(1897) 3월 인천 牛角里에서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2개월 가까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갖고 있던 자본이 다 떨어지자 1898년 4월 일본인 시부자와 에이치(澁澤榮一)를 대표로 하는 京仁鐵道引受組合과 계약을 맺어 前渡金 20만 불을 받은 뒤 다음해(1899) 1월 완전히 매도해 버리고 말았다. 이때 모오스가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170만 불로 전도금까지 합치면 200만 불에 가까웠다. 모오스는 허가서 1장으로 큰 횡재를 한 셈이었다.¹³⁾

경인철도 부설권을 인수한 시부자와는 그전부터 한국의 금융업 등 제반 이권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경부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기 위한 발기위원을 조직하여 한국정부에 교섭을 시도한 바 있었다. 그러던 차에 경인철도 부설권을 얻은 모오스가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소식이 있자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아 그 권리를 인수하게 되었다. 시부자와는 1899년 5월 京仁鐵道合資會社를 설립하여 그 해 9월 한강 노량진에서 인천까지 개통시킬 수 있었다.

(3) 전기사업 독점권

금광 채굴권과 철도 부설권 외에 전기사업에 관계되는 이권이 또한 외국인에게 넘어갔다. 경인철도 부설공사에 기사로 참여하였던 콜브란과 보스트

12) 실제로 경인철도는 철도 재료의 대부분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또 철도의 경영방식도 미국의 영향을 받은 민간식 경영이었다(鄭在貞, 앞의 글, 119쪽).

13) 田保橋潔, 앞의 글, 530쪽.

朴性根, <京仁線敷設權과 美日關係>(素軒南都泳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大學社, 1984) 참조.

윅(Hany R. Bostwick, 甫時旭)이 1898년 2월 19일 역시 알렌의 도움을 얻어 서울 시내에 전차와 전기를 가설하는 권리를 획득하였던 것이다. 특히 전차의 가설은 고종황제의 빈번한 洪陵(閔妃陵) 행차를 보고 콜브란 등이 비용이 절감되고 번잡함을 피하는 길은 전차를 가설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진언하자 황제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우선 고종은 서둘러 자본금 20만 원으로 漢城電氣會社를 설립하였다. 운영진으로는 고종을 대리한 사장에 李采淵, 부사장으로는 玄尙建이 참여하였다. 한성전기회사가 처음으로 착수한 사업은 전차 노선의 부설로서, 콜브란과 보스트윅에게 위촉하였다. 이 전차의 운영을 둘러싼 계약문을 보면 콜브란 등이 공사비용 및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공사를 청부 맡았으며 전차의 운영까지도 대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혀 미국 측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즉 초기 한성전기회사의 성격은 고종이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한국회사였으며 콜브란과 보스트윅은 공사 청부사업자였던 것으로 파악된다.¹⁴⁾

여하튼 이 회사의 설립으로 동대문에 발전소가 세워지고 1899년 5월에는 서대문에서 홍릉사이의 單線軌道의 전차가 개통되고 이듬해에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민간용 전등이 켜지게 되었다.

그런데 전차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이를테면 가설공사에 있어서는 생계에 위협을 느낀 인력거군의 반대에 부딪치기도 하였고 전차가 개통된 뒤에는 사람을 치어 죽게 한 사건이 일어나 이를 목격한 군중들이 전차를 때려부수고 이를 불태워 버리는 한편 전차를 파괴하고 일본인 전차 승무원을 부상시키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콜브란 등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설상가상 한성전기회사는 자본과 기술이 매우 미숙한 상태에서 시작했으므로 첫 번째 사업인 전차 노선 공사비용부터 콜브란에게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한성전기회사 자체를 담보로 잡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콜브란은 채권자로서 정식으로 앞서 손해배상금을 합친 150만 원의 채무액을 지불

14) 魯仁華, <大韓帝國時期的 漢城電氣會社에 관한 研究>(《梨大史苑》17, 1980).

할 것을 주장하고 직접 한성전기회사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채무 해결을 위한 문제는 콜브란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한국정부의 항의로 상당한 시일을 끌면서 양국 정부간의 문제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해관 총세무사였던 영국인 브라운(John McLeavy Brown)이 중재역할에 나서 원장부를 조사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콜브란은 원장부가 소실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뿐만 아니라 후에 그의 조사에 의하면 원채무액은 50만 원 정도로 콜브란 등이 3배나 올려 잡아 책정하였음도 아울러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한국정부는 오히려 미국의 환심을 끌기 위해 콜브란과 보스트윅이 요구한 액수 중 75만 원을 지불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서울의 수도 공사 이권까지 주었다.

1904년 6월 채무액의 지불이 완료되자 한성전기회사를 재편성하게 되었다. 즉 콜브란과 보스트윅은 미국측이 100만 원, 고종이 1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자본금 200만 원으로 한·미합자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따라서 명칭도 韓美電氣會社로 개칭하였다.¹⁵⁾ 그런데 자본금을 증자한다는 명목으로 콜브란은 고종의 양해 아래 미국 코네티컷州 세이브루크市的 엠파이어 트러스트회사(Empire Trust Company)와 교섭을 시작해 25만 불의 차관을 얻어냈다. 이때의 계약서의 규정대로 종로에 있던 회사 본점을 세이브루크시로 이전하게 되었고 회사의 대표명의로 밀스(H. R. Miels)로 변경되었다. 또한 한미전기회사는 코네티컷州法の 지배를 받는 미국회사가 되었다.

물론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콜브란과 보스트윅이 전담하였고 고종은 단순한 출자자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결국 한미전기회사는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이 되었으며 먼저 고종과 공동 사업으로 시작했던 회사 설립 취지는 백지화되었다. 더욱이 1909년 6월 일본의 정치적 압력으로 콜브란은 회사 권리를 170만 원을 받고 일본에

15)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編, 《舊韓國外交文書》12(高麗大 出版部, 1967~1973), 《美案》3, 문서번호 3108 美人麥九雲 및 麥健護照申請(이후는 《舊韓國外交文書》는 생략하고 각국 문서, 즉 《美案》, 《日案》, 《法案》, 《德案》, 《英案》 등으로 표기한다).

善積三郎, 《京城電氣會社 20年 沿革史》(東京, 1929)에 실린 漢城電氣會社 定款은 실제로는 1904년에 설립된 韓美電氣會社의 정관을 잘못 인용한 것이다.

양도하였다. 회사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고종은 전적으로 제외되었으며 콜브란은 자신의 자본만 회수하여 영국으로 떠나버렸다. 이와 같이 한미전기회사가 일본으로 넘어가자 한국인 종업원 100여 명이 이에 항의하면서 동맹파업을 하였다. 그러나 국권이 거의 상실된 상황에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일본측의 회유로 일단락되고 다시 일본의 독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 러시아의 이권쟁탈상

(1) 광산이권

1896년 2월에 일어난 아관파천은 러시아가 한국에서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는 데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침 그 당시 미국인 모오스가 운산금광 채굴권을 획득하자 즉각적으로 러시아도 광산이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1896년 4월 22일 러시아인 니스첸스키(Nisichensky)에게 함경도 慶源·鏡城郡 전체의 砂金 채취권과 銀·鐵·石炭의 채굴권까지 특허하였다. 아울러 採鑛地로부터 海岸 또는 境界까지의 철도나 馬車道의 부설권을 허여하였던 것이다.

1896년 4월 22일 외부대신 李完用과 러시아인 니스첸스키 사이에 체결된 광산채굴 계약문에 의하면¹⁶⁾ 채굴 기한은 15년(단 석탄의 경우만 25년) 그리고 소득의 4분의 1을 한국왕실에 상납하는 조건이었다. 또한 고용인 문제, 면세 규정은 미국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였다. 단지 러시아는 지역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관계로 금광 개발 뿐 아니라 석탄채굴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경원·경성 2군은 함경도의 북단 두만강의 右岸에 위치하고 있다. 이 두 광산은 對러시아 특별 무역장인 慶興과 인접한 지역인 관계로 이 계약에 의거하여 광산을 開採하고 철도를 부설하게 되면 이 지방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세력은 한층 더 확장될 수 있었다. 러시아는 이같이 광산 채굴권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이권마저 차지하고 채굴작업에 들어가 주로

16)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編, 《舊韓國條約彙纂》下(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5년), <露國人 니시첸스키(Nisichensky) 咸鏡道鑛山採掘 特許契約>, 465~468쪽.
《慶源·鏡城兩處의 鑛山採掘權을 准許하는 契約書》(奎 23267). 계약문 내용은 附錄 9를 참조할 것.

석탄채굴에 치중했으나 炭質이 좋지 못하여 얼마가지 않아 廢鑛하고 말았다.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 상인 세베렙(Shevelev, 余維略), 스타르체프(Startsev), 그레이(G. Grei) 등 3인이 1897년 2월 23일 러시아 공사 웨베르(Karl Ivanovich Weber, 韋貝)를 통해 함경도 永興·吉州의 금광과 탄광 개발권을 신청하고 그 草稿를 送交하였다.¹⁷⁾ 한편 러시아 海蔘威의 大商 수보로프(M. I. Suvorov)도 같은 해 3월 9일 함경도 端川·三水 두 곳의 광산 채굴권을 요청하였다. 곧이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러시아 軍部代派師官 코로소브스키(Kolosovsky)를 파견하였다.¹⁸⁾

이에 한국 외부대신 이완용은 전자의 러시아 상인 3명이 요청한 영흥·길주 광산 채굴권은 허가할 수 없음을 통고하였다.¹⁹⁾ 그 이유는 영흥군은 ‘我國宮殿尊奉之皇地’이므로 함부로 開墾控鑿할 수 없다는 것과 길주는 이미 작년 여름에 ‘我民之請願開採地’로서 지금 현재 자본을 투자하여 開鑛작업이 진행중임을 밝히고 있다. 후자의 수보로프의 개광 신청에 대해서는 단천은 오래 전부터 현지민들이 채굴작업을 속행하고 있던 곳이라 允准하기 곤란하나 삼수군은 개광을 허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²⁰⁾ 그러나 막상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러시아인들이 중적을 감추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후 러시아는 1898년 10월 公使 馬先寧과 秘密參贊 네뵤로지네프(Williams Neporozhnev)가 금광채굴 설계 조목의 초안을 작성하여 고종에게 봉정하였다. 그러나 채굴개시 문제는 자본출자 문제로 잠정적으로 보류상태에 있었다. 애초에 그들이 요구한 것은 궁내부 광산 중 금광 한 곳을 선택하여 러시아 단독자본으로나 아니면 한국왕실과 공동자본으로 출자하여 러시아 광산기사를 고빙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1898년부터 한국정부의 방침이 “외국인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한국 광산을 개광할 수 없고 또한 어느 나라의 외국인 광

17) 《俄案》1, 문서번호 807 露人들의 永興·吉州金鑛·炭鑛 開發 契約草稿 送交의 件.

18) 《俄案》1, 문서번호 809 露商 스워로프의 端川·三水兩處 鑛山採掘權 要請 및 문서번호 816 露商 스워로프의 鑛山採掘權 許可 促求.

19) 《俄案》1, 문서번호 819 露商에 對한 永興·吉州 鑛山採掘權 不許事.

20) 《俄案》1, 문서번호 826 露商에 對한 三水郡內 開鑛의 許可事 및 문서번호 1008 三水·甲山地方에서의 露人鐵鑛人의 蹤迹 問議에 對한 回答.

산기사도 고빙하지 않을 것”으로 정해졌음을 통고하였다. 그러자 러시아는 이미 광산채굴권 및 광산기사 고빙에 대해 그 이전에 언약을 받았음을 상기시키면서 先手者에게 허여할 것을 주장하였다.²¹⁾ 결국에는 광산기사 고빙문제에서도 러시아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이후 1900년대에 이르러서 러시아는 점차 일본의 세력에 밀려 한국에 대한 정치적 세력이 약해지면서 특히 광산이권 분야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²²⁾

(2) 삼림채벌권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삼림이권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 벌목사업이 그 경영상 소자본·저기술로도 가능한 점과 러시아의 지리적 여건이 한국과 인접해서 벌목사업에 유리한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삼림이권을 기반으로 임야 점유 등의 방법을 통한 영토 침략도 용이하다는 이점을 들 수 있다.

1896년 9월 아관파천 시기에 블라디보스톡 상인 이울리 이바노비치 브리너(J. I. Bryner)는 러시아공사의 도움으로 한국정부와 최초로 한국 최대의 삼림자원의 보고인 두만강과 압록강 연안, 울릉도에 대한 삼림채벌권을 획득하였다. 계약체결 후 브리너는 블라디보스톡에 회사를 설립하고 삼림조약 14조 규정에 따라 1897년 1월 3일 담보금 15,000 루블을 납입하고 벌목 개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²³⁾

이후 브리너는 1897년 1년간의 사업실적을 결산한 후 합동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의 4분의 1을 한국정부에 납부하였다. 그가 이익금으로 송부해 온 총액은 377원이었다.²⁴⁾ 실제의 이익은 이보다 많았으리라 추측된다.

21) 《俄案》2, 문서번호 1477 鑛權은 先手者에게 許與해야 한다는 主張·문서번호 1489 鑛權 要求의 先手者에 대한 認定 要請·문서번호 1492 鑛業技師 雇傭에 露以外的 他國人을 쓴다면 事理에 違越된다는 主張·문서번호 1493 同上 照覆·문서번호 1496 鑛務技師는 何國人을 莫論하고 雇傭할 수 있다는 照覆.

22) 강영심, 〈舊韓末 러시아의 森林利權 획득과 森林會社의 채벌실태〉(《梨花史學研究》17·18합집, 1988), 483쪽.

23) 강영심, 위의 글, 484~487쪽 참조.

24) 《俄案》1, 문서번호 1184 伐木價의 送付事·문서번호 1185 同上銀票의 領收事.

그런데 벌목사업을 전개하던 브리너는 1897년 11월 이 벌목 특허권을 전매하기 위해 피터스버어그로 갔다. 1898년초에 베조브라조프(A. M. Bezobrazov)가 여기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는데 그는 일본에게 한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넘겨주게 된 당시의 상황에 대응하여 한국에서의 러시아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에 획득한 브리너權을 모태로 半官半民의 기업을 세워 한국을 장악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한국정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벌목이권은 네뵤로지네프(Williams Neporozhnev)와 베조브라조프에게로 차례로 인수되었다. 이렇게 벌목 특허권이 전매되어지는 과정에서 벌목사업은 부진해서, 1898년과 1899년의 사업 이익금 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국정부에 납부했는데 그 금액이 겨우 71원에 불과했다.²⁵⁾ 물론 장부의 조작이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겠지만 그보다도 러시아 조정내의 대한정책 변화, 사업지원 감축 등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벌목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공사 파브로프(A. Pavlow, 巴禹路厚)는 한국정부에 압록강변 삼림 채벌사업의 착수 기한을 연기해주도록 하는 삼림조약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정부는 여러 차례 러시아측의 요구를 거절하였지만, 결국 이 제안에 동의하고 착수 시기를 1901년을 기준하여 3년 이내로 연장하도록 허락해 주었다.²⁶⁾

이후 1901년, 1902년의 벌목사업 실태는 단지 일본측 자료를 통해 압록강 일대에서 벌채한 재목의 가격이 1년간 수백만 원에 달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그 사업실태 및 실적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²⁷⁾ 따라서 러시아 삼림회사가 획득한 막대한 이익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브리너의 벌목 특허권을 인수하여 벌목사업을 운영해 오던 베조브라조프는

《俄案》2, 문서번호 1285 伐木代價의 送付事· 문서번호 1286 同上의 受領事.

25) 《俄案》2, 문서번호 1630 森林會社에 關한 文件 및 年納金の 送付事· 문서번호 1631 同上 回答.

26) 《俄案》2, 문서번호 1661 森林伐採事業의 着手延期 許諾要請· 문서번호 1685 森林伐採事業의 着手時期를 3年內로 延長하는 데 對한 同意.

27) 日本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36-1(東京: 日本國際連合協會, 1936), 문서번호 423 露國ノ龍岩里經營狀況ノ件.

1903년에 접어들면서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벌목사업 경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1903년 4월 14일 男爵 긴즈부르크(G. G. Ginsburg)를 漢城주재 代辦事務員으로 임명하였다.²⁸⁾ 이렇게 벌목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척시키려는 의도의 이면에는 당시 러시아의 대한정책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이 벌목 특허권과 삼림회사의 운영은 한국 영토, 특히 통치권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러시아인의 발호를 용납함으로써 이후 러시아세력의 진출에 교두보를 세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압록강을 건너 거리가 먼 白馬山城에까지 세력을 뻗쳐 벌목사업을 벌였고, 용암포에 병참기지구축을 위한 작업과 의주지역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토지 매입과 병참기지 건설 행위에 위협을 느낀 일본측은 수차에 걸쳐 한국정부에 그 불법행위를 저지토록 강요하였다. 물론 한국정부측도 러시아의 용암포 진출을 비난하고 그들의 철수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을 한국정부로부터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병참기지화하려는 조치로 용암포 租借 계획을 세워 한국정부와 정식 교섭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측의 강요로 1903년 7월 20일에 용암포 조차 계약이 체결되었으나,²⁹⁾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압력에 의해 한국정부는 용암포 조차 계약의 파기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이 계약의 인준을 거부하였다.³⁰⁾

러시아는 용암포 조차 계획이 정식 인준되지 못하여 극동정책에 차질을 주게 되자 7월 20일에 맺은 가계약을 자의로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을 고수하였다.³¹⁾

러시아의 용암포 점령이 강화·확장됨에 따라 일본은 이에 강경히 대응하여 滿韓 국경지대에서의 러·일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는 최후 교섭에 착수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1904년 2월 10일 일

28) 《俄案》2, 문서번호 2033 露森林會社の 漢城駐在員任命 및 同人의 陸見要請事.

29) 《日本外交文書》36-1, 문서번호 480 露國ノ龍岩浦ニ於ケル租借契約書寫差進ノ件.

30) 《日本外交文書》36-1, 문서번호 488 龍岩浦租借契約破棄ニ關スル件.

31) 《俄案》2, 문서번호 2121 龍川에 砲臺를 築設한 데 對한 抗議.

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러·일전쟁이 시작되었다.³²⁾

전쟁이 개시되자 일본은 2월 23일 한국과 한일의정서를 조인하여 한국을 자기 권한하에 넣고 한국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전쟁이 우세해짐에 따라 일본은 5월 18일 한국정부로 하여금 한·러간 삼림협동조약을 폐기시켰다.³³⁾

이후 전쟁에 승리하여 한국을 반식민지화한 일본은 방대한 삼림이권을 장악하고 벌목사업을 전개하였다. 압록강·두만강유역의 방대한 원시림을 벌목키 위해 우선 1906년 10월 19일 통감부 감시하에 한국정부와 이 지역을 한일 양국정부가 공동경영한다는 내용의 ‘삼림협동경영약관’을 조인하였다.³⁴⁾

3) 독일·영국의 이권쟁탈상

(1) 광산이권

한국이 독일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것은 1883년 11월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한국 광산에 대한 관심은 이미 한국이 개항하기 훨씬 전부터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1868년 독일인 오페르트(Ernst Oppert)는 忠淸道 德山에서 대원군의 묘지를 파헤치고 금을 캐려다 발각된 일이 있었는데 그는 한국의 광물은 아시아 가운데 제1위라고 평가하였다. 오페르트는 유태계의 독일인으로서 일찍이 한국 연해에도 세 차례 探航을 거듭하여 한국의 지리 사정을 대강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다.³⁵⁾ 물론 그 사건이 독일정부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동기로 일어난 것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독일이 한국 광산에 관심을 갖게 된 시초가 아닌가 한다.

그 후 1880년대 뮐렌도르프(Paul Georg von Mollendorff, 穆麟德)가 한국의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協辦으로 임명되면서 한국의 광산이권에 관여하게 되

32) 李光麟, 《韓國史講座》V-근대편 (一潮閣, 1981), 466~467쪽.

33) 《高宗實錄》, 광무 8년 5월 18일.

34) 《高宗實錄》, 광무 10년 10월 19일.
《官報》, 광무 10년 12월 27일.

35) 러시아大藏省 編, 日本農商務省 譯, 《韓國誌》(1904), 45~46쪽.

Ernst Oppert, 韓沽昞 譯, 《韓國紀行》(一潮閣, 1981), 122~123쪽.

었다. 이 때에 독일인 지질학자 곱체(Carl Christian Gottsche, 居最)가 광산기술자를 대동하고 내한하여 한국 전역을 답사하고 광산의 매장량 상태를 조사하였다.³⁶⁾ 또한 독일 영사관에서는 독일인 광산기술자의 초빙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80년대에는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후 1895년에 이르러 미국이 평안북도 운산금광 이권을 획득하게 되자 독일도 독자적인 이권 평등을 내세워 世昌洋行을 통해서 이권 교섭을 추진하였다.

세창양행은 뮐렌도르프의 권유와 본사 함부르크로부터의 지원에 의해 1884년 한국 제물포에 창설된 무역상회였다. 특히 뮐렌도르프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1886년 1월 한국에 대해 차관제공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세미운송권을 얻는 과정에서 급격히 사세를 확장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정부에 의한 최초의 세미운송운선 정책이었으며 외국에게 처음으로 세미운송권을 양여했던 것이다. 이후 독일 希化船을 통한 세곡 운송은 한국 해운업계에 타격을 주었으며 이는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 구호에도 일부 반영되고 있었다. 세창양행은 생산공장을 겸비한 주식회사가 아니라 일종의 무역대행업체로서 1880년대에는 화폐기기·인쇄기기를 수입하였고, 1890년대에는 무기류를, 그리고 1900년대에는 우피와 홍삼을 대량으로 수출하였다.³⁷⁾ 또한 미국 보든(Borden)社의 우유제품의 판매도 대리하였다.³⁸⁾ 특히 경제적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문화적 사업에도 관심을 지녔고 차관을 제공하면서 비싼 이식을 부과시켜 고리대 같은 성격으로 미숙한 한국 경제를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다.

이러한 세창양행을 앞세운 독일은 1897년 3월 鑛地를 정하기도 전에 한국 정부와 광산 특허계약을 체결하였다. 독일은 처음에 평안도 殷山金鑛의 채굴

36) C. Gottsche, "Über den Mineralreichtum von Korea", *Mitteilungen Geographische Gesellschaft*, 1890, 1~20쪽.

37) 《皇城新聞》, 1900년 4월 3일자 雜報에 보면 官蔘(原蔘蔘并) 28,000여 근을 李容翊이 세창양행에게 103,000원에 매도하였다는 기사가 실리고 있다.
《皇城新聞》, 1900년 11월 19일자 雜報에 의하면 生牛 200頭를 세창양행이 太沽로 운송한다는 기사가 실리고 있다.

38) 《大韓每日申報》, 1904년 8월 1일, 광고 外.

李培鎔, 〈開港以後獨逸의 資本浸透와 世昌洋行〉(《梨花100주년기념논총》, 이화여대, 1986).

권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정부에서는 당시 은산금광이 궁내부 소속 금광으로 이미 한국인에 의해 採金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한편 당시 한국의 국내 정세는 국왕의 아관파천으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가 못되었다. 이후에도 세창양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안도내에서의 채광을 금지하는 한국정부에 대해 항의하였다. 즉 미국에게만 평안도 은산금광 채굴권을 허여한 처사는 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결국 독일은 은산금광을 포기하고 대신 강원도 금성의 堂峴金鑛 채굴권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당현 역시 궁내부 소속이니 다른 곳을 택할 것을 요구하자 주한 독일영사 클리인(F. Krien, 口麟)이 우리 외부대신서리 兪箕煥의 가슴을 밀치고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만행을 저질러 독립협회와 언론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³⁹⁾ 한국내의 여론이 악화되자 클리인이 무례행위에 대한 사과문을 유기환에게 보냄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었고 이와 동시에 강원도 금성군 당현금광 채굴권을 1898년 7월 18일 독일의 세창양행에게 정식으로 허여하였다.

당현금광의 채굴은 함부르크에 있는 메이어(E. Meyer & Co.)商社의 제물포 지점인 세창양행에서 대행하였는데, 채굴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현지민과 기존 광업권 처리문제, 토지 배상문제, 고용 임금문제 등으로 마찰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일측의 태도는 항상 한국에 대한 주권 침해로 귀결되었다.

독일은 당현금광에 대해 지대한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 한 예로 1899년 하인리히(Heinrich)황태자가 내한하여 교통편도 좋지 않은 산간 벽촌인 당현금광을 방문하였으며, 그 때 서울에서 당현까지 전화선이 가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는 독일인 公使, 중국 상해의 총영사, 독일인 간호장교, 신문기자 등 한국을 방문한 독일인은 거의 당현금광을 거쳐갔다.⁴⁰⁾ 그러나 독일이 기대하였던 것만큼 당현금광은 성적이 좋지 않아 채굴에 착수한 지

39) 《독립신문》 1898년 7월 2·4·5일.

40) 《德案》 2, 문서번호 2068 獨親王 하인릿히公 來韓日程 및 迎接儀禮 條項.

《독립신문》, 1899년 6월 9일.

《皇城新聞》, 1899년 6월 9·15일.

7년만인 1905년 폐광하고 다른 광산을 대신 요구하여 평안도 宣川鑛山이 다시 독일에게 넘어갔다.

한편 영국의 이권에 대한 관심은 1883년 11월 26일 조영조약을 체결한 뒤부터 본격화되었고, 특히 한국 광산에 대한 진출은 상해에 주재하고 있었던 영국인 商社 怡和洋行(Jardin Matheson & Co.)을 통해서 시작되었다.⁴¹⁾ 당시 한국에 진출한 영국계 상업회사에는 怡和洋行 이외에 廣昌洋行(Bennet & Co.), 威陵加洋行(Homle Ringer & Co.) 등이 있었다. 특히 이화양행의 上海 대리인 거빈스(J. H. Gubins, 高斌士)는 뮐렌도르프와 친분이 두터워 뮐렌도르프가 내한하기 이전부터 鑛務에 관한 교섭을 추진한 바가 있었다. 1882년말 중국 海關에 관계하던 뮐렌도르프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協辦으로 부임할 때, 이화양행 소속의 영국인 광산기술자 버틀러(Buttler, 巴爾)가 동행하였다.⁴²⁾ 마침 1883년 1월 뮐렌도르프가 광산개발 및 철도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왕의 전권대사로 상해에 파견되었을 때 이화양행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뮐렌도르프와 교섭하여 상해·제물포간의 정기항로 개척권 및 광권 이익을 타결시킬 수 있었다.⁴³⁾ 그리하여 이화양행이 인천에 출장소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인 광무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883년 7월 18일 영국의 이화양행은 뮐렌도르프와 계약을 맺어 이익의 10분의 3을 과세한다는 조건으로, 열강 중에서 최초로 한국에 근대식 채굴기계와 광산기술자를 파견하여 경기도 永平 萬世橋 砂金場에서의 채굴을 시도하였다.⁴⁴⁾ 그리고 강원도 金化, 金城지역에까지 관심을 갖고 있었다. 1884년 12월 이화양행이 제물포에서 철수하고 거문도 점거사건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으나, 이화양행 관계자만이 아니라 주한 영국외교관들도 역시 광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41) 조기준, <開港後の 國內經濟>(《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1973), 687~688쪽.

42) 金允植, 《陰晴史》, 고종 19년 10월 28일.

“(上略) 唐景星, 陳茂南, 王柏恭, 穆麟德, 巴爾, 同上船, (中略) 巴爾, 英國人, 管中國開平鑛務之人, 卽鑛師, 與唐觀察, 爲看鑛苗而求者也”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영국인 버틀러도 唐景星과 함께 開平鑛務에 종사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43) P. Mollendorff, 고병익 역, <穆麟德手記>(《진단학보》 24, 1963), 160~161쪽.

44) 《英案》 1, 문서번호 111 萬世橋金鑛의 採掘不准에 對한 異議 및 代鑛准許要請. 《統記》, 고종 20년 10월 15·17·21일.

청·일전쟁 이후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1895년 7월 매장량이 풍부하기로 소문난 은산금광 채굴권이 미국으로 넘어가자 이에 자극받은 영국도 이권의 평등을 내세워 채굴권의 허여를 요구하였고 시기를 보아 독일의 세창양행이 1898년 4월 당현금광 채굴권을 획득하자 독일과 같은 경로를 밟아 광지를 정하지 않고 먼저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⁴⁵⁾ 그리고 나서 독일이 한국정부의 허락을 받지 못해 포기했던 殷山金鑛에 주목하고 募軍商會(Morgan Company)라는 브리티쉬 신디케이트(British Syndicate)를 조직하고⁴⁶⁾ 한국정부에 집요하게 광산 채굴권 허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은산은 외국인에게 특허할 수 없는 광산임을 통고하였고, 이에 영국은 무단으로 채굴을 강행하였다.⁴⁷⁾ 그리하여 채굴하고 있던 기존의 한국인 광부들과 무력 충돌을 야기시켰는데, 영국인들은 주로 일본인 광부들을 고용하여 저항하는 한국인 광부들에게 무자비하게 발포하였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영국기를 걸고 방문을 내붙여 그들의 불법 침탈을 가증시켜 나아갔다.⁴⁸⁾ 무단 강점과 외교적인 공세를 통해 1900년 3월 영국은 은산금광 특허권을 윤희받고 있는데⁴⁹⁾ 이 과정에서 활약이 컸던 모르간(Pritish Morgan, 摩廢)은 런던 주재 한국총영사로 임명되기도 했다.⁵⁰⁾ 그러나 영국이 큰 기대를

45) 《英案》1, 문서번호 1391 英商採掘要請의 美人例均霑 및 平安道內 各鑛의 開採不淮理由· 문서번호 1394 英商의 世昌洋行例에 따른 採鑛合同의 呈覽 및 會訂要請事· 문서번호 1399 英商 採鑛合同의 會商日時通告 및 世昌合同依據不能言明事· 문서번호 1400 同上件 合同의 世昌例期必依據 主張.

46) 《英案》2, 문서번호 1681 英公使와 同國會議員 摩廢 및 礦師 海意 等の 陞見要請事.

《皇城新聞》, 1899년 12월 6·8·19일.

《平安南道來去案》(奎 17988-3), 1899년 12월 15일 및 (奎 17988-4), 1900년 2월 26일의 殷山郡守 報告證書.

47) 《英案》2, 문서번호 1713 殷山礦採掘 強行示唆· 문서번호 1717 殷山礦開採 強行日時的 豫告事.

《皇城新聞》, 1900년 1월 6일.

48) 《平安南北道來去案》(奎 17988-4), 1900년 2월 19일, 보고서 제1호.

49) 《英案》2, 문서번호 1779 殷礦問題의 妥協案 同意事· 문서번호 1780 殷礦開採 允許事.

《皇城新聞》, 1900년 3월 19일.

《宮內府案》(奎 17801-7), 1900년 3월 19일, 照會 참조.

50) 《英案》2, 문서번호 1790 英國會議員 摩廢의 倫敦名譽總領事被命狀 傳達依賴.

걸고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채굴에 임했던 은산금광의 産金高는 1905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1906년 4월 완전히 작업을 중지하였다.

이와 별도로 1903년 4월 영국인 피어스(A. L. Pearse)가 황해도 遼安金鑛의 채굴권을 신청하여 1905년 11월 특허권을 획득하였다.⁵¹⁾ 이것은 咸陵可회사를 통해 추진되었는데 정부의 반대로 일시 중지되었다가, 러·일전쟁 후 일본·미국과 합동으로 각국 공동의 자본을 투자해 설립한 코리안 신디케이트(Korean Syndicate)를 통해 얻어내고 있었다. 코리안 신디케이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에서 각국의 이권교섭 절차가 끝나고 광산기술자들이 좋은 광산을 선택하자마자 이들 여러 광산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인터내셔널 컴퍼니(International Company)를 만드는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코리안 신디케이트에 참여한 각국의 이권단체들은 인터내셔널 컴퍼니에서 그들의 출자한 비율에 따라 이득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열강간의 경쟁을 줄이고 작업의 확실성과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²⁾

즉 1905년대에 이르러서는 열강의 한국 광산에 대한 투자방식의 양상이 전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독일의 당현광산이나 영국의 은산금광이 막대한 시설과 자본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패로 끝나자 열강은 단독자본으로 채광에 임할 때의 위험부담에 매우 신중을 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 각 열강이 자본을 모아서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경영한다던가 서로간의 이익에 따라서 특허권을 양도하기도 하고 특허받은 광산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였다. 소위 뒷거래가 이루어진 것인데 광산업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여보자는 계책이었다.

이외에도 영국은 평안북도 龜城金鑛 채굴권을 일본의 도움으로 얻어내고 미국과 더불어 사탕산업 개발 특허권을 얻기도 하였다. 또 철도이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1898년 영국공사 조오단(J. N. Jordan, 朱爾典)은

《皇城新聞》1900년 3월 13일 및 1900년 4월 12일자에 보면, 모르간은 영국으로 돌아갈 때 韓人 方有榮을 런던에 유학시키기로 하고 대동하였다고 한다.

51) 《遼安金鑛特許命書》(奎 23392·23393).

52) 《日本外交文書》39-2, 문서번호 966 「コリアン・シンヂケート」ニ關スル機密文書送進ノ件.

Korean Syndicate 및 Korean Mining Syndicate Agent, *Horace N. Allen Papers*.

호남선 부설권을 요청한 일도 있었다.⁵³⁾ 물론 한국정부에서는 시기상조임을 내세워 거절하였지만 이렇듯 영국은 모든 이권부문에 노력을 경주하였던 것이다. 영국은 초기에는 청에 의존하고 후에는 일본과 결탁하면서 이권교섭을 추진하여 이권침탈을 도모하였다.

4) 일본의 이권쟁탈상

(1) 광산이권

일본은 열강의 이권침탈 중에서 가장 집요하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 국가였고, 한국 광산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개항 이후 끊임없는 현지조사를 통해 한국의 유망한 광산을 탐지하고 있었으나, 갑신정변의 실패로 인한 개화당의 붕괴, 그리고 청국의 한국 내정간섭, 거기다가 당시 일본 국내의 불경기로 對韓 이권 침투 정책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재진출을 시도한 결과 얻어낸 것이 1891년 長崎縣의 馬木健三이 특허받은 경상도 昌原金鑛이었으나, 별 이득을 거두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다.⁵⁴⁾

한편 1890년 이후 일본은 주로 전문적인 지질학자·광산기술자들을 동원하여 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들에 의해 작성된 조사보고서는 그 후 일본이 한국 광산을 침투하는 데 입문서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지적한 광산의 대부분은 뒤에 열강들의 채굴지로 선택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보고서는 단순한 雜文이 아니라 한국 광산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안내서 같은 구실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1895년 이후에는 철도 등 다른 이권에 비해 광업부문에서는 별 다른 진전이 없다가 1900년에 이르러 충청도 稷山金鑛을 불법 침탈한 후 한국정부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여 정식 채굴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⁵⁵⁾ 일본의 광산이권 장악

53) 《英案》1, 문서번호 1382 英商社 湖南線敷設權 請願의 請議要請事· 문서번호 1392 湖南鐵道敷設 請願의 謝絶.

54) 《日案》2, 문서번호 2013 昌原金鑛採掘에 關한 日商馬木約章의 確認要請.

55) 《稷山鑛約》(奎 23094).

이 다른 열강보다 시기적으로 늦어진 이유는 광산개발이란 일종의 투기성을 동반하여 예기치 못할 위험 부담을 가지고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만큼 아직 일본의 경제는 성숙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당시 이권교섭은 주로 궁정 외교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명성왕후 시해사건 이후 한국왕실이 일본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를 하였던 점도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실제 鑛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인들은 교묘한 계책을 발휘하여 광구 선정을 지연시키는 술책을 썼다. 즉 일본은 1902년 8월로 정해진 광구 선정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광구 획정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직산군 일대가 그들의 조계지인 양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파헤치면서 인근 주민들을 괴롭히고 실질적인 수익을 확보하였다. 그러면서도 한국왕실에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광구의 미정으로 소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상납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으로 일본인들은 직산금광 채굴권 획득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국 전 광산에 불법 침투하여 시굴작업을 감행한 후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한국정부에 인가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로 인한 폐단을 호소하는 현지 주민들의 진정이 날마다 신문지상에 실릴 지경이었다.

1905년 을사 한일조약이 체결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자 일본 農商務省 소속 광산기사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의 광산 조사를 맡아서 하게 되었다. 그들은 전국을 5개 반으로 나누어 각각 조사하였고, 그 조사결과는 1906년 통감부 鑛山監督署에서 발간한 방대한 규모의 《韓國鑛業調查報告》로 집대성되었다.⁵⁶⁾ 또한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자 곧이어 한국 광산에 적용되는 광업법을 만들어 1906년 6월 한국정부로 하여금 내외에 공포하게 하였다.⁵⁷⁾ 이로 인해 광업권이 양도·저당의 목적물로 사용되어 광업권을 획득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자금 융통의 길을 열어 주게 되었다. 또한 국내외인의 구별을 철폐함으로써 일본인과 서양인이 한국 광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음과 동시에 구미자본과 일본의 제휴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광업법이 공포되자 일본인들은 자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광업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따라서 1906년 이후 광업권 허가 건수는 일본인이 압도

56) 松田繁·笹尾正一 등, 《韓國鑛業調查報告》(鑛山監督署, 1906).

57) 宋炳基 外, 《韓末近代法令資料集》4(國會圖書館, 1971), 590~595쪽.

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다.⁵⁸⁾

또한 일본인들은 일본인에 의해 경영되는 광산뿐만 아니라 다른 열강들이 채굴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광산에서도 임금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인 광부와 청나라 광부를 제외한 외국인으로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인 광부보다 훨씬 월등한 대우를 받았으며 주로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였다.

(2) 철도이권

일본의 철도이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하였는지는 앞서 경인철도 이권의 양여과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일본의 경부철도 부설 구상은 이미 1880년대부터 등장하여, 청·일전쟁을 계기로 하여 對韓外交의 최우선정책으로 확립되고 있었다.⁵⁹⁾ 이러한 와중에 경인철도 부설권을 미국인 모오스의 자금난을 기회로 매수하는 한편 경부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1898년 4월 제3차 러·일협상인 로젠-니시協定(Rosen-西 Convention)이 체결되어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상업과 공업 진출을 러시아가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즉 러·일간에 滿韓 교환정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위치가 유리해지자 다시 경부철도 부설권 획득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해 5월 시부자와가 직접 내한하여 교섭을 벌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총리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고종황제를 알현하는 등 적극적인 外援運動을 하였다. 그 결과 동년 9월 8일 한·일 양국의 공동경영을 전제로 한 京釜鐵道合同條約이 체결되었다.

한편 경의철도는 정치·지리적 특성 때문에 청·일전쟁 이후 시종일관 일본의 이권침탈의 대상으로 주목되었고, 마침내는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군에 의해 군사용 철도로 부설하게 되었다. 원래 경의철도 부설권은 프랑스의 퍼블리유회사(Compagnie de Fiveslille)가 러시아의 도움으로 1896년 7월에

58) 李培鎔, <日帝初期 鑛業法 改正과 鑛業侵奪實態>(《東亞研究》17, 西江大 東亞研究所, 1989).

59) 鄭在貞, <경부철도의 부설에 나타난 일본의 한국침략 정책의 성격>(《韓國史研究》44, 1984), 110~111쪽.

언어냈었다. 그런데 자금사정으로 건설이 어렵게 되어 결국 “본 철도를 가설하게 될 경우 프랑스의 技師와 재료를 사용토록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그 이권을 한국정부에 반환하고 말았다.

이에 한국의 관·민 자본가들은 大韓鐵道會社를 조직하여 경의철도의 자주적 건설을 계획하였고 정부는 나름대로 西北鐵道局을 설치하여 경의철도의 직영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의철도의 자력 건설운동은 결국 자본조달의 실패 등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내재적 한계성과 그 한계성을 교묘히 이용하여 침투해 들어오는 일본의 침략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마침내는 러·일전쟁을 계기로 하여 일본의 군사용 철도로서 부설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처럼 경부철도와 경의철도는 단순히 한국의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능에 머물지 않고 한국의 식민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간선동맥으로 역할하였던 것이다.

(3) 전선이권

電線利權은 그 자체의 이득뿐 아니라 한국의 정보를 탐지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열강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특히 일본은 한국 전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한국의 정세 변동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통신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임오군란 이후 한국의 전신시설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즉 계물포조약 교섭 중 50만 원의 배상금을 한국이 거부하거나 액수를 줄이려고 할 때에는 광산채굴권·전선 가설권을 그 대가로 요구할 것을 계획한 바 있었다.⁶⁰⁾

결국 1883년 1월 <釜山口設海底電線條款>을 한국정부와 맺게 되었다. 이 조관은 전문 5조로 되어 있는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후 한국의 전선이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각 조항마다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조약을 맺어놓고 한국은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후에 이 조약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양국 정부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게

60) 《日本外交文書》15, 문서번호 127 事變處理ニ關シ再訓令ノ件.

李培鎔, <列強의 이권침탈과 朝鮮의 對應>(《韓國史市民講座》7, 一潮閣, 1990), 101~105쪽.

되었을 때, 결국은 한국정부의 양보로 매듭지어졌다. 바로 1885년 청나라와 맺은 〈義州電線合同〉으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이다.⁶¹⁾

그러나 청에 의한 西路電線의 가설은 일본측을 자극하여 앞서의 〈釜山口設海底電線條款〉의 제2조와 제3조를 들어 강력히 항의하였다. 즉 제2조의 “對抗爭利(대항해서 利를 다투는)하는 성질의 전선을 가설하지 않는다”는 사항과 제3조의 “해외 電線이면 반드시 부산의 일본전신국과 通聯해야 한다”는 사항에 위배되는 점을 들어 즉각 서로전선의 가설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⁶²⁾ 이에 대해 한국정부에서는 의주·인천은 부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對抗爭利하는 전선에 해당될 수 없음과 서로전선은 국내 전선 뿐으로 해외 전선에 적용되지 않음을 들어 반박하였다.⁶³⁾ 그러나 일본측의 끈질긴 항의로 다시 〈釜山口設海底電線條款續約〉을 맺게 되었다.⁶⁴⁾ 일본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이 조약은 전문 4조로 작성되었는데 인천·의주간 전선을 부산 일본전신국에 통연하는 조건으로 새로이 한성에서 부산에 이르는 南路電線을 가설한다는 것이 주내용이었다.

남로전선은 전선의 재료와 선로 문제를 놓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61) 한편 청은 일본의 급격한 진출에 자극을 받고 이를 견제할 목적과 특히 임오 군란·갑신정변을 겪는 동안 본국과 한국 사이에 신속한 통신연락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885년 6월 〈義州電線合同〉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 의해 그들은 중요 경비와 물자를 스스로 부담하여 우리 국내에 電信線을 가설하고 이를 의주에서 중국 전선과 연결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1885년 8월 인천·한성간에 최초의 전신시설이 개통되고 이어 평양을 거쳐 의주에 이르는 1천여 리의 전선이 완성되었다. 이른바 西路電線이라 일컫는 것이다(《高宗實錄》권 22, 고종 22년 6월 6일). 그러나 서로전선은 처음부터 청국에서 발안하여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의 자금과 기술로써 가설되었던 만큼 가설 후에도 그 운용과 관리권은 청국정부로 돌아가게 되었다. 또한 漢城電報總局(華電局)이라는 중국 전보국이 이 땅에 설립되었으며 그 업무에 있어서도 한문 전보를 위주로 하고 국문 전보의 정식 부호는 제정조차 안되었다. 결국 서로전선은 청을 위해 청 위주로 경영되어 우리가 받은 혜택은 거의 없었다.

62) 《日案》1, 문서번호 550 京義電線架設에 關한 異議·562 京義電線架設에 關한 再次抗議·581 京義電線架設에 關한 三次抗議.

63) 《日案》1, 문서번호 555 京義電線架設異議에 對한 反駁·571 京義電線架設再抗議에 對한 反駁.

64) 《高宗實錄》, 고종 22년 11월 16일.

《日本外交文書》18, 문서번호 91 海底電線設置條約續約締結ノ旨報告ノ件.

작수 3년 만인 1888년 6월에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최초로 朝鮮電報總局이 설립되고 우리 정부 주관의 전신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최초의 전신 규정인 〈電報章程〉이 제정되고 오늘날까지 이용되는 국문전신부호가 마련되어 자주적인 전신 발전에 계기를 이루는 듯 하였다. 이어서 1891년에는 한성에서 원산에 이르는 北路電線이 개설되어 가설과 관할은 조선전보총국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남로전선 가설 후에도 일본은 줄곧 양국 전보국 사이의 電信聯接 및 부산·인천간의 전보 요금을 인천·의주간의 그것과 동일하게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사사건건 한국의 전신사업에 관여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에 대한 電債가 밀리기 시작하여 그것을 갚기 위해 다시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오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전신시설에 별로 투자도 하지 않고 계약문 몇 글자로 막대한 이득을 추구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은 이를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계기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은 군함 7척과 육군 7천 명의 병력을 인천에 상륙시키고 갑신정변 이후 후퇴한 정치적 입장을 만회하려 하였다. 이에 일본은 무엇보다도 경인지방과 일본 본국간의 신속한 전신 연락이 필요하였고, 그 때문에 남로전선의 통신상태에 대해 특별히 주의하였다. 남로는 전주지방을 통과하기 때문에 동학군이 전주를 점령한 후에는 전신이 자주 불통되었다.

일본공사 오토리 가이스케(大鳥圭介)는 남로전선의 불통 상태는 〈釜山口設海底電線續約〉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일본인 전신기술자를 파견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續約〉을 과장되고 억지로 해석한 것이지 일본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성·부산간에 남로전선 외에 그들 전용의 군용선을 새로이 따로 설치하겠다고 요구하는 한편으로는 경인간에 한국정부의 허가도 없이 군용전선을 불법 가설하였다.⁶⁵⁾

일본은 이미 경부간 전선 가설을 요구할 때 野戰電信隊 800여 명을 인천

65) 《統理衙門日記》, 1894년 6월 8일.

과 부산에 상륙시켰다. 즉 인천에 병력을 파견할 때 전선 가설계획도 미리 세워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로서는 일본의 요구는 한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력히 거부하였지만 끝내 일본은 부산에서 대구·충주를 거쳐 서울에 이르는 경부간 군용전선을 불법 가설하였다. 그리고 그해 8월 〈暫定合同條款〉을 맺어 앞서 불법 가설한 경부·경인간의 군용전선을 강제로 합법화시켰다.⁶⁶⁾

한편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기울어지게 되자 일본은 이제까지 華電局에서 관할하던 서로전선을 전리품으로 접수하여 그들의 군사용으로 전용시켜 버렸다. 엄연히 서로전선도 1885년의 청국과 조약을 맺을 때 관리는 華電局에서 하더라도 소유권은 한국정부에 있었는데도 청국 소유로 못박아 전리품으로 간주하였다. 곧이어 북로전선의 관할권마저 강탈해 갔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제 한국정부의 관할권은 상태 불량외 남로전선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의 전용인 경부간의 군용전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전지역의 전신 연락은 日本軍用電信所에 의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896년말에는 한국인의 公衆電信을 경인·경부간의 군용전선에서 취급하기도 하였지만 국문전보를 취급하지도 않았거니와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쉽사리 이용하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민족적 울분으로 일본의 군용전선을 파괴 절단하는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일본은 대륙침략의 가장 중요한 바탕의 하나로 전신선의 완전 강탈을 획책하여 1895년 1월 이른바 〈韓日電線設置條款續約改正案〉(전 13조)을 만들어 주한 일본공사 이노우에에게 그대로 한국정부와 체결할 수 있도록 훈령하였다. 즉 앞서 〈暫定合同條款〉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 한국 국내의 남로전선을 비롯한 기존 전선을 탈취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앞으로 건설하는 일체 전선의 수축과 관리 및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완전히 한국의 전신사업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려는 목적이었다.⁶⁷⁾

66) 《高宗實錄》，고종 31년 7월 20일.

《日本外交文書》27, 문서번호 428 朝鮮政府卜假條約締結ノ件·문서번호 442 事變後朝鮮政府卜假條約訂結協議ノ件.

그러나 삼국간섭에 접하게 되자 열강의 견제가 심해지고 설상가상 을미사변으로 인해 일본의 정치적 입지가 위축됨에 따라 그들의 야망은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결국 일본의 독점적인 전선 이권침탈에 대한 한국정부의 저항도 거세어짐에 따라 1896년 7월 서로·북로전선은 한국정부에 반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부간 군용전선은 그대로 점거하여 그들의 수비병을 배치하여 관할하였다.

5) 기타 각국의 이권쟁탈상

프랑스는 한국의 철도와 광산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1896년 4월 미국인 모오스가 경인철도 이권을 획득한지 얼마 안된 시기에 피블리이유회사(Compagnie de Fiveslille, 貴務林公司)의 대표 글리이유(Antoine Grille)가 서울~의주간과 서울~공주간의 철도부설권을 요구하였다. 7월 3일 교섭이 이루어져 경의철도 부설에 대한 허가서가 교부되었다.⁶⁸⁾

프랑스공사 콜랭 드 뵈랑시(V. Collin de Plancy, 葛林德)는 경의철도를 건설할 때 아울러 철로 주변의 平壤石炭鑛·載寧鐵鑛·遂安銅鑛 등의 광산개발을 허여해 주기를 한국정부에 요청하였다.⁶⁹⁾ 즉 철로를 건설할 때나 사용할 때 석탄·철·동은 필수 불가결한 물품이므로 동시에 한 회사에서 개발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착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국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개광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밖에도 프랑스는 9월 30일 또 다른 철도이권을 요청하였다. 즉 서울에

67) 《駐韓公使館記錄》，機密送 4호, <日韓電線設置條款續訂改正案>.

68) 《法案》1, 문서번호 697 漢陽 義州間 및 漢陽 公州間 鐵道開設件의 法國會社에의 許與與否 回示要望件· 문서번호 698 同上 漢城 義州間 鐵道 敷設工事의 法國商會 准與通告件· 문서번호 717 同上 京義線路 敷設契約에 關한 件. 李光麟, 앞의 책, 400쪽.

69) 《法案》1, 문서번호 715 京城 平壤間 鐵道敷設 및 鑛山開發에 關한 件· 문서번호 716 同上 鐵路를 京城 義州間으로 延長敷設 勸誘와 數個處의 開鑛要求· 문서번호 732 平壤石炭鑛 載寧鐵鑛 遂安銅鑛等 鑛山開發에 對한 准許與否 明示要望件.

서 목포에 이르는 호남선, 원산까지의 경원선, 러시아의 韓國交界인 압록강을 통과하는 함경선 등의 부설계획을 내놓았으나⁷⁰⁾ 모두 한국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1901년 광산 특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광산지역 선정문제로 오랫동안 한국정부와 논쟁을 벌이다가 1907년 평안도 昌城金鑛으로 광지를 확정하였으며, 1928년까지 채굴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 갔다.⁷¹⁾

한편 뒤늦게 한국의 경제이권에 눈을 돌린 이태리는 1903년 4월 9일 영사 로제티(Carlo Rosetti, 魯士德)를 통해 광산채굴권을 신청하였다. 한국정부에 의해 거절을 당한 이태리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 1905년 3월 25일 한국정부와 주한 이태리공사가 이태리 식민회사(La Societa Coloniale Italiana)에게 광지 한곳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고 채굴권을 특허받았다.⁷²⁾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이태리는 이태리-한국광업회사(Societa Italiana Miniere Corea-Italy Syndicate)를 새로이 조직하고 광지를 모색하였다. 이후 광지 선정문제로 논란이 거듭되다가 1907년 厚昌鑛山을 얻어내었는데 1911년 이후 포기하고 말았다.⁷³⁾

〈李培鎔〉

70) 《法案》1, 문서번호 736 三鑛山開發件의 延施에 對한 有感表示件· 문서번호 737 湖南 京元 咸鏡線 敷設工事に 對한 法國會社에의 許施依賴件.

71) 《法案》2, 문서번호 1346 峇달열鑛合同의 畫押要請件· 문서번호 1356 峇달열鑛合同의 速決要請件· 문서번호 1362 峇달열鑛合同의 畫押再促求件· 문서번호 1448 蔭泰來金鑛合同 盖印送交件· 문서번호 1449 同上 峇달열鑛合同 畫押還送의 件.

72) 《義礦契約》(奎 23460-國漢文) 및 (奎 23461-英文).

73) 《農商工部來去文》(奎 17782), 1907년 8월 30일.

李培鎔, 《韓國近代鑛業侵奪史研究》(一潮閣, 1989), 191~219쪽.

2. 독립협회 전후 일제의 이권강점

1) 독립협회 전후 한국을 둘러싼 국제관계와 이권문제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청나라 세력을 한반도로부터 구축하고 한국과 청이 종래 갖고 있었던 종속관계를 일단 배제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만을 식민지로 영유하고 요동반도를 할양받는 데 성공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세력판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어진 삼국간섭으로 인하여 일본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오래 만끽할 수 없었고, 오히려 삼국간섭의 여세를 몰아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이 현저해지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러시아와 한국내의 친러세력에 의해 그 세력이 위축되어 가던 일본은 을미사변을 통하여 상황을 바꾸어 보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국제 여론의 악화와 더불어 한국에서의 발언권이 결정적으로 저하되었고,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어진 아관파천과 김홍집내각의 붕괴는 한반도에서의 일본세력의 약화와 함께 러시아를 위시한 열강들의 세력 균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열강의 이권침탈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게 되었고, 열강의 이권침탈에 반대하는 한국내의 움직임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 독립협회·만민공동회였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속에서 일본은 일단 러시아와의 관계 조정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세력을 만회해 보고자 하였다. 1896년 5월 14일의 웨베르-고무라 覺書(Waerber-小村 Memorandum)과 같은 해 6월 9일의 로바노프·야마가타 議定書(Lobanovr-山縣 Protocol)은 모두 일본이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발언권을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는 형태로 일단 타협을 하는 것이었다. 즉 러시아와의 공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1898년 4월 25일에는 로젠-니시 協定(Rosen-西 Convention)이 체결되

었다. 그 내용은 당시 러시아가 청의 旅順과 大連을 조차하는 등 청의 이권 침탈을 적극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한국내에서는 反러시아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러시아의 여순·대련 租借를 묵인하는 형태로 협상을 성립시켜 한국에서의 상업·공업상의 유리한 지위를 러시아로부터 보장받아 한반도에 대한 재진출을 노리는 것이었다.

또 한편에서는 미국과 영국과 같은 제3국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¹⁾ 영국을 비롯한 열강들은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지나친 간섭에 항의를 하고 있었고, 한국정부 또한 러시아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구미 열강들이 차지해 놓고도 미처 손을 대지 못한 각종 이권을 사들이거나 이양받으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정부를 조종하여 이를 기회로 새로운 이권을 강점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일본의 행동을 후원한 것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영국이었고, 또 일본의 이권을 앞선 것은 미국과 프랑스였다.

2) 철도이권

철도는 근대 자본주의가 생성해 낸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대규모적인 상품유통과 국내 시장의 형성 수단으로서 산업 발달을 뒷받침한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주목되고 있었다. 따라서 후진지역에 있어서의 철도는 그 대부분이 제국주의 열강의 수중에 장악되어 부설·운영됨으로써 그들의 침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철도이권 가운데 가장 먼저 양여된 것은 미국의 모오스(J. R. Morse, 毛於時)가 1896년 3월 알렌(Horace N. Allen, 安連)의 도움을 받아 얻어낸 경인철도 부설권이였다. 모오스는 경인철도 부설권을 얻은 뒤 친구인 미국인 타운센드(W. D. Townsend, 陀雲仙)와 함께 韓國開發會社(Korea Development Co.)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1897년 3월 인천 牛角里에서 기공식까지 거행하였다. 그리고 약 2개월 가까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더 이상의 진척

1) 윤병석, <열강의 이권침탈>(《한국사》 18, 국사편찬위원회, 1973), 125~126쪽.

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경인철도 부설권이 미국측으로 넘어간 것을 뒤늦게 안 일본은 일본 공사를 통하여 외부대신 李完用에게 경인철도 부설권을 미국에게 양여한 것은 〈暫定合同條款〉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항의하였다. 그러나 이완용은 이 해(1896) 1월 일본정부에 대하여 500만 원 차관을 제청할 때 그 중의 200만 원은 철도 부설비로 충당하겠다고 하였으나, 3·4개월이 지나도록 회답조차 없었으니 한국정부의 과실이기보다는 일본측이 이에 응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 항의를 묵살하였다.²⁾

이러한 상황속에서 모오스가 자금난에 봉착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일본측은 1898년 4월 일본인 시부자와 에이치(澁澤榮一)를 대표로 하는 京仁鐵道引受組를 내세워 계약을 맺고 前渡金 20만 불을 지불한 뒤 다음해 1월 완전히 매수해 버리고 말았다.

이는 경인철도 부설 허가서의 내용을 완전히 묵살한 행위였는데, 왜냐하면 허가서의 제15조에 의하면 “본 철도회사 및 한국정부 사이에 措辦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면 양측에서 공평히 差定 임명하는 2명 내지 5명의 위원이 이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11조의 “본 철도가 완성된 후 15년이 경과했을 경우, 한국정부가 본 철도의 재산을 당시의 시가로 매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배하고 일방적으로 그 권리를 일본에게 팔아버린 것이었다. 또한 일본 역시 한국정부의 승인도 없이 자본력을 앞세워 불법으로 매수하였던 것이다.

경인철도 부설권을 인수한 시부자와는 그전부터 한국의 금융업 등 제반 이권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경부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기 위한 발기위원을 조직하여 한국정부에 교섭을 시도한 바 있었다. 그러던 차에 경인철도 부설권을 얻은 모오스가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소식이 있자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아 그 권리를 인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시부자와는 1899년 5월 경인철도합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해 9월 한강 노량진에서 인천까지 개통시킬 수 있었다. 1900년 7월에는 난공사로 일컫던 한강의 가교까지

2) 윤병석, 위의 글, 126쪽.

준공하여 경인간의 교통을 1시간으로 단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으로 경인철도의 이용은 매우 부진하였다. 경인철도회사는 승객 흡수에 고심한 나머지 광고문을 내붙여 적극적으로 선전을 하였지만 한국인의 거부감은 여전하였다.³⁾

한편 일본은 경부철도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관심을 쏟고 있었는데 특히 경부철도는 산업자본 확립기에 있었던 일본이 한국의 지배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국의 총력을 기울여 부설한 해외철도였다. 따라서 경부철도 부설권의 획득에서 완공에 이르는 과정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 야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⁴⁾

당시 일본은 경인철도 부설권이 미국인에게, 경의철도 부설권이 프랑스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경부철도 부설권도 제3국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시부자와 등 150명의 자본가들이 정부의 후원을 얻어 경부철도주식회사 창립을 서두르는 한편 한국정부에 대하여 철도부설의 특허를 청원하였다. 그러나 한국내에는 반일 감정이 높았고 또 국왕이 러시아공사관에 머물러 있었던 때이므로 일본의 청원을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1898년 2월에 이르러 러시아가 경부철도 부설권을 얻으려는 움직임을 나타내자 일본은 당황하여 한국정부에 항의하였다. 그 후 4월에 제3차 러일협상인 로젠·히 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상업과 공업 진출을 러시아가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즉 러·일간에 滿韓交換政策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위치가 유리해지자 다시 경부철도 부설권 획득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해 5월 시부자와가 직접 내한하여 교섭을 벌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총리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고종황제를 알현하는 등 적극적인 外援運動을 하였다. 그 결과 동년 9월 8일 한·일 양국의 공동경영을 전제로 한 〈京釜鐵道合同條約〉이 체결되었다.⁵⁾ 그 내용은 말할 것

3) 이배용, 〈澁澤榮一과 對韓經濟侵略〉(《國史館論叢》6, 國史編纂委員會, 1989), 185~221쪽.

4) 鄭在貞, 〈경부철도의 부설에 나타난 일본의 한국침략 정책의 성격〉(《韓國史研究》44, 1984), 108쪽.

5) 朝鮮鐵道史編纂委員會, 《朝鮮鐵道史》1(朝鮮總督府 鐵道局, 1937), 52~56쪽.

도 없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되었는데, 즉 제3조에 “철도노선의 부지, 정거장·창고·공작장 등에 충당할 용지는 한국정부가 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5조에 “철도에 필요한 기계와 물건 중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관세를 면제하고 철도용 地稅와 그 밖의 각종 철도 소관의 이익에도 徵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제15조에 “철도회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한·일 양국의 정부나 국민 외에는 그 株券을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경부철도합동조약>에 의해 경부철도의 부설권이 발기위원회에 주어지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당시 일본의 국·내외적 조건은 방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해외철도의 건설을 추진할 만한 입장에 놓여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1899년 1월 시부자와를 위시한 발기위원들은 처음부터 한국철도의 지배에 적극적으로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수상에게 경부철도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한 특별 보조를 요청하였다. 결국 그 해 9월 정부의 특별 보조 명령이 내려져 그것을 토대로 1901년 6월 시부자와를 取締役社長으로 하는 京釜鐵道株式會社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⁶⁾

경부철도주식회사의 간부들은 전국 각지를 누비면서 위로는 天皇家로부터 아래로는 시골의 村長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계층을 주주로 모집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일본 국민이 경부철도주식회사를 통해 한국 침략을 위하여 총집결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것인 동시에 경부철도는 일본에게 있어서 단순한 해외철도의 부설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 권력과 政商資本家の 주도하에 일본의 일반 민중이 망라하여 결집한 국가적 사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⁷⁾ 이러한 지원을 배경으로 1902년 8월 착공하여 만 3년 뒤인 1905년 5월에 15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도를 준공하였다.⁸⁾

러·일전쟁 중에 한국인의 피와 땀을 착취하여 건설된 경부철도는 전쟁이 끝나자 통감부 경부철도관리국에 이관되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6) 《東京經濟雜誌》1901년 7월호, 40쪽.

7) 鄭在貞, 앞의 글, 109쪽.

8) 박만규, <한말 일제의 철도부설지배와 한국인동향>(《韓國史論》8, 서울대, 1982).

일본은 처음부터 철도부지에 대한 한국정부의 제공 약속을 이용하여 부지의 광점 의도를 갖고 있었다.⁹⁾ 철도의 운영에 필요한 토지는 물론 주요 정거장을 중심으로 그들의 세력 근거지의 형성을 기도하였다. 즉 철도부설을 통해 한국 침략의 군사적 거점으로 뿐 아니라 일본인의 상업 진출과 농업 이민 문제를 결부시켜 식민지화의 전초작업을 다져나갔던 것이다. 대체적으로 일본은 정거장 부지로서 20만 평 이상을 요구하였다.¹⁰⁾ 일본의 일급 정거장인 東京驛·上野驛 등이 3만 평 미만임과 비교할 때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단정적으로 증명해 주는 처사였다. 심지어 경의선 군용철도의 경우는 정거장 부지와 함께 군용지로서 300만 평 이상을 요구하였다.

물론 한국정부와 현지 주민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강제수용을 자행하였다. 이렇게 일본군에 의해 점탈된 토지는 일본 민간인들에 불하되어 그들의 거류지로 새로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살던 한국인들은 시가의 10분의 1 혹은 20분의 1에 불과한 형식적인 보상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 일시에 생활기반을 잃고 말았다.

한편 철도의 부설에는 각종의 자재 및 막대한 노동력이 소요되었다. 노동력의 징발에 있어서도 저임금 정책으로 일관하였음은 물론 러·일전쟁시 경부선·경의선의 속성 공사로서 엄청난 수효의 인력 동원이 필요하게 되자 강제징발을 강행하였다. 철도 부역뿐만 아니라 군수용품 수송, 군용 목적을 위한 도로 건설에 동원되어 농촌사회를 극도로 피폐화시켰다. 심지어는 戰場이 이동되면서 만주지역까지 한국인 인부가 강제 투입되었다.¹¹⁾

막상 철도가 부설된 후 이용 과정에서 한국인 승객에 대한 대우도 노골적으로 차별정책이 드러났다. 한국인 승객을 화물 취급하였을 뿐 아니라 철도 운임도 일본인 승객이 주로 이용하는 장거리 1, 2등을 우대하고 한국인 승객이 이용하는 단거리 3등 여객 운임을 항상 인상 조정하여 철도에서 한국인 승객을 구축하려 하였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철도이권 침탈로 자국내의 불황을 극복하고 자본과

9) 박만규, 위의 글, 251~259쪽.

10) 朝鮮鐵道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662쪽.

11) 《大韓每日申報》, 1904년 8월 14·16일.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한국민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하여 제국주의 침략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여 갔던 것이다.

3) 광산이권

일찍이 1891년 일본은 경상도 昌原金鑛 채굴권을 획득하였으나 별로 이득을 보지 못하고 포기하였다.¹²⁾ 이후 러시아에 대한 한국민과 한국정부의 불신을 틈타 재진출을 시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철도 등 다른 이권에 비하여 광산이권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1896년 미국이 雲山金鑛 채굴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1898년에는 독일이 堂岷金鑛을 차지하고 그 이듬해 영국이 殷山金鑛 채굴권을 요구하면서 무력 충돌까지 야기하자, 일본은 이제까지 그들이 입수한 광산 지식을 근거로 1899년 12월 1일 5개의 鑛處를 선정하여 요구하였다.

일본이 요구한 5개의 광산은 황해도의 長淵·殷栗·載寧과 경기도의 安城, 충청도의 稷山이었다.¹³⁾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들 광산이 모두 궁내부 소속이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음을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일본공사에게 통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쉽게 단념하지 않고 이를 반박하면서 재고를 요청하였다. 즉 궁내부에서 관할함으로 허가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이익 균점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일본이 청원한 5개 처의 광산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 외국인이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한 곳인가를 자세히 해명해 달라고 항의하였다. 아울러 그 중 조사 결과가 가장 유망할 것으로 파악된 직산금광을 선정하여 다시 교섭을 전개하였다.¹⁴⁾ 직산에는 1899년 8월부터 이미 安城郡에

12) 李培鎔, 《韓國近代鑛業浸透史研究》(一潮閣, 1989), 162~168쪽.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編, 《舊韓國外交文書》(高麗大 出版部, 1967~1973) 《日案》2, 문서번호 2013 昌原金鑛開採에 관한 日商馬木約章의 確認要請(이후 표기는 《舊韓國外交文書》는 생략하고 《日案》으로 함).

13) 《日案》4, 문서번호 5435 淺野總一郎의 長淵 外 四個鑛山 採掘許可 請願의 件 및 문서번호 5458 長淵 等 開鑛請願 不准의 件.

14) 《日案》4, 문서번호 5462 長淵 等 採鑛請願 不許에 對한 反問 및 再考要請.

서 日語學校를 운영하던 일본인 福祉辰藏이 비합법적으로 채굴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국정부에서는 물론 일본의 직산금광 채굴권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러자 일본은 영국과 똑같은 경로, 즉 “先採掘強行, 後特許權 要求”의 방식을 취하였다. 이리하여 직산금광을 둘러싸고 1900년초부터 일본인과 한국정부 관리 사이에 충돌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00년 1월 29일 충청남도 관찰사가 外部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무력을 동원하여 불법 채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이에 한국정부의 외부에서는 일본공사가 이미 직산금광 채굴권을 요청한 바 있으나 어느 외국인을 막론하고 허여할 수 없으며, 通商口岸을 제외하고는 일본인이 임의로 한국민의 토지를 매입하여 開設鑛役할 수 없으며, 직산군수의 금지 명령에 항의한 일본인들을 嚴辦할 것을 일본공사에게 요구하였다.¹⁶⁾ 그러나 일본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직산금광에서는 여전히 일본인들의 불법 채굴이 감행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산에 거류하는 일본인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처럼 불법채굴 강행이 문제를 일으키자 일본은 다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직산금광 채굴의 특허를 强請하였다.¹⁷⁾ 즉 일본에게만 임의로 직접 광산에 들어가서 채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한국정부의 처사는 일본 商民도 영국·미국·독일 상민과 더불어 마땅히 평등하고 균일한 이익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차등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다른 외국인 경영 광산의 경우보다 훨씬 한국측에 유리한 계약 조안을 마련하였으니 이를 참작해서 유허할 것을 청원하였다.¹⁸⁾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른 외국인 채광조약에 비해 특색이 있다면 각 조문마다 뒤에 但書を 붙여 구구한 설명

15) 李培鎔, 앞의 책, 168~183쪽.

《日案》4, 문서번호 5496 稷山 不法採鑛 日人の 招還 및 嚴辦要求.

16) 《日案》4, 문서번호 5531 稷山 日人桶村 等 不法採鑛의 對辦 및 回答促求.

17) 《日案》4, 문서번호 5598 淺野의 稷山採鑛請願의 准許强請.

18) 《日案》4, 문서번호 5598 淺野의 稷山採鑛請願의 准許强請의 附1 同上條件 更訂出願書 및 附2 稷山金鑛採掘條約案.

〈稷山採掘許可의 願末〉(《澁澤榮一傳記資料》16, 東京:澁澤榮一傳記資料刊行會, 1957), 584~588쪽.

을 나열하고 있는 점이다.

그 후 이익 균점의 명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일본과 한국정부의 논란이 거듭되었다. 즉 주요 쟁점은 철도이권과 광산이권을 동일하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있었다. 한국정부의 견해는 다른 열강이 한국의 금광을 차지하고 있는 대신 일본은 경인·경부간의 철도이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익 균점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광산과 철도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경인철도는 한국정부로부터 허여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한 것이며, 경부철도도 어디까지나 韓日人 합작사업으로서 한국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인 만큼 광산이권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⁹⁾

이와 같이 광산이권의 요구가 난관에 부딪치자 일본공사 하야시는 본국정부에 다음 두 가지 계책을 의뢰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다.

- ① 영국이 은산금광을 강제 점거하여 끝내 이를 공인받은 예에 비추어서 강경한 시위의 필요성을 말한 뒤 균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② 직산금광 청원의 당사자인 시부자와는 계약 체결시에 상납금 및 운동비조로 5·6만 원의 금액을 지출할 용의가 있는지를 문의해 주도록 의무성에 요청하였다.

(日本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37-1, 東京: 日本國際連合會, 1936, 문서번호 608 韓國鑛山關係雜纂(附記 5) 稷山金鑛採掘請求ノ件, 517~518쪽 및 문서번호 609 稷山特許運動費ニ關スル件, 519쪽).

결국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끈질긴 교섭 결과 하야시공사가 1900년 7월 고종황제를 陛見하였을 때 직접 고종으로부터 직산금광 특허의 응낙을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1900년 8월 16일에 궁내부 대신서리尹定求와 일본의 시부자와·淺野總一郎 鑛山組合의 대리인 佐左木清磨와의 사이에 〈稷山金鑛採掘合同條約〉이 체결되었다.²⁰⁾

19) 《日案》4, 문서번호 5683 稷山採鑛 不許方針의 再闡明 및 同條約草案返送·문서번호 5684 上件駁論 및 妥辦促求.

20) 《稷山鑛約》(奎 23094) 및 《制度局鑛業書類》(奎 21935).

《日案》5, 문서번호 6070 稷山金鑛合同의 正式調印未了와 過渡措處依賴의 附錄.

이렇게 정식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인이 자행한 애초의 불법 침탈이 결국은 합법화되고 만 것이다. 이 조약내용은 앞서 한국정부가 영국, 독일 등과 체결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였다. 즉 鑛區 면적이 60리×40리였으며 25년 기한에 이익금의 25%를 황실에 바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광구는 2년 이내에 직산 일대를 조사한 후에 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용인 등에 한국인을 10분의 9를 채용한다는 것과 토지 배상문제, 면세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다. 한가지 지적할 점은 각 조항마다 단서를 붙여, 뒤에 일어날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여 방어장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직산금광을 특허받은 시부자와·淺野總一郎 광산조합은 광구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정부와 마찰을 야기시켰다. 원래 2년 이내에 광구를 정한다는 조항은 다른 열강들보다 1년을 연장시킨 것인데도 불구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채굴작업은 진행하면서 上納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들의 저의는 선정 기한을 오래 끌며 그들의 채광활동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즉 시굴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직산군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산천과 농토까지 마음대로 침범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이 기대하였던 만큼 産金 성적이 양호하지 않자 광구 선정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²¹⁾ 오히려 직산군수가 그들의 작업을 방해하여 鑛務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광처를 선정해 줄 것도 신청하였다.²²⁾ 물론 광구 선정을 하기까지는 채금수입이 있어도 한국정부에 납세의 의무는 지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이 직산금광에서 자행한 여러 가지 奸策 중 가장 비열한 것은 광구 선정의 지연술책이었다. 즉 일본은 1902년 12월, 광구 선정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1902년 8월까지) 선뜻 광구를 결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다. 오히려 外部에 납세를 독촉하는 직산군수를 비난하는 호소문을 보내고 군수의 횡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開工 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다.²³⁾

21) 《日案》 6, 문서번호 7133 稷山郡守 鑛夫逮捕 및 徵稅措置의 停止命令要請· 문서번호 7168 稷山金鑛件의 宮內府擔當 辦理照覆.

22) 《日案》 6, 문서번호 7253 稷山金鑛開工의 延期要請 및 他鑛擇定 示唆· 문서번호 7321 稷山鑛所件 他鑛代擇의 拒否.

23) 《日案》 6, 문서번호 7327 稷山金鑛 起業 遲延責任의 轉嫁와 代鑛件 解明.

실질적으로는 채금 작업을 하면서도 납세금을 기피하기 위해, 또 한정된 지역보다는 보다 넓은 구역에서 자유로이 채굴을 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수법을 이용하여 강탈한 또 다른 예로서 비슷한 시기의 遼安金鑛 채굴권의 획득을 들 수 있다. 일본인들은 직산금광 채굴권 획득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의 거의 모든 광산에 침투해 들어가고 있었는데, 1900년부터 직산금광을 경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광차를 물색하여 이권교섭을 전개하였다. 그들의 특허권 요구의 진행방법은 우선 희망하는 광산에 불법적으로 침투하여 시굴작업을 한 후에 유망하다고 판정되면 한국정부에 인가를 청원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황해도 수안금광이었다.

수안금광은 한국의 광산 중에서 역사가 오래된 금광으로²⁴⁾ 대한제국시에는 궁내부 소속으로 한국인 소유주가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채금하면서 매년 200兩씩 국가에 상납하고 있었다. 점차 수안금광의 채금성적이 양호하다는 소문이 알려지자 먼저 일본인들이 수안지방을 아무런 공문도 없이 수시로 시찰하고 심지어는 1900년 11월 무단으로 점탈하는 사태로까지 진전되었다.²⁵⁾ 그 해 초에는 영국인들이 殷山金鑛을 무력으로 점유하면서 결국은 이권을 획득하게 되자 이제 외국인들은 그들이 채굴하고자 희망하는 광산이라면 한국정부의 의사와는 아랑곳없이 무조건 불법침입하여 채금하는 것이 그 시기의 유행사가 되어 버렸다.

1901년에는 일본인의 간청으로 일인 광산기술자 10명이 궁내부에 고용되어 수안금광에서 작업에 종사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작업을 개시하자 그들은 한국인 광산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광지를 독점하여 기계를 설치하고 독자적으로 일본인 경무관·순검·목수 등을 고용하였다.²⁶⁾ 또한 그들의 작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한국인 德大를 납치하고 구타하는 일은 물론 민가에 들어가 부녀자를 협박하는 행패마저 서슴지 않고 있었다.

24) 伊木常誠·鈴木四郎, 《韓國鑛業調査報告(黃海道편)》(鑛山監理署, 1906), 38~49쪽. 茶山 丁若鏞도 谷山府使로 있을 때 遼安 金店을 직접 見聞한 바를 《應旨論農政疏》에 쓰고 있는데 금의 생산이 풍부하고 潛採가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5) 《內部來去文》(奎 17794-3), 1900년 11월 24일, 12월 6일.

26) 《黃海道來去案》(奎 17986-2), 1901년 5월 11·16일, 6월 7일, 7월 28일 보고.

이와 같은 일본인들의 만행에 대해 1904년에는 수안금광에서 채금작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소자본가들이 연명으로 內藏院에 진정서를 보내 수안에서 외국인의 채금행위를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²⁷⁾ 또한 수안군민들에 의한 합자회사 조직으로 일본인 자본에 대항하기도 하였다.²⁸⁾

그 후 1905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영국과 합동으로 수안금광 특허권 교섭을 재개하였다. 즉 일본 三井物産과 런던의 영국신디케이트(British Syndicate)가 합자하여 자본금 100만원 중 3분의 2는 영국이, 3분의 1은 일본이 부담하기로 정하고 한국황제에게 은밀히 윤희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⁹⁾ 그러나 그 후 자본금 조달문제도 있고 또한 1904년 2월 한국정부로부터 광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산채굴권을 획득한 미국인 콜브란(A. H. Collbran, 骨佛安)과 보스트윅(H. R. Bostwick, 甫時旭)도 영국측의 제의로 참여시키게 되었다.³⁰⁾ 그리하여 1905년 3월 28일 일본·영국·미국의 자본이 모여 영·미·일 합자회사가 런던에 설립되었는데 영국신디케이트의 피어스(A. L. Pearse, 畢爾思)를 대표로 하여 영국과 미국측의 대리인은 보스트윅, 일본측 대리인은 삼정물산의 경성주재 지점장 小田柿捨次良을 내정하였다.³¹⁾ 이 시기에 들어서면 각 열강이 자본을 모아서 합자회사를 설립해 공동으로 경영한다던가 서로간의 이익에 따라서 특허권을 양도하기도 하고 특허받은 광산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였다. 소위 뒷거래가 이루어진 것인데 광산업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보자는 계책이었다. 그러나 그 후 일본은 다시 광산기술자를 수안금광에 파견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의 자본을 공동으로 투자하기에는 의외로 매장량이 적다는 보고에 접하자 삼정물산으로 하여금 일·영·미 합자에서 탈퇴하게 하였다.³²⁾

27) 《黃海道各郡報告》(奎 19157-4), 1902년 11월 16·22일.

《請願書二件綴》(奎 26387), 1901년 2월, 1903년 11월, 1904년 4월.

《遂安郡金鑛關係》(奎 26387-3), 1904년 10월.

28) 《黃海道遂安金鑛章程》(奎 18977), 1903년 8월.

29) 《日本外交文書》38-1, 문서번호 608 遂安金鑛ノ日英合辦經營ニ關スル件.

30) 《日本外交文書》38-1, 문서번호 610 遂安金鑛日英米三國合同經營ニ關シ照會ノ件.

31) 《日本外交文書》38-1, 事項 16 〈韓國鑛山關係雜纂〉, 문서번호 611~626 참조.

32) 李培鎔, 〈列強의 利權侵奪과 朝鮮의 대응〉(《韓國史市民講座》 제7집, 一潮閣, 1990), 111쪽.

4) 연해어업이권

개항 후 한반도 연해어장이 황금어장으로 알려지면서 열강, 특히 일본의 침탈대상이 되었다.³³⁾ 1882년 청국이 황해·평안도 연안의 어업권을 획득하고, 1883년 일본이 전라·경상·강원·함경도 4도의 연안어업권을 획득함에 따라 한국의 황금어장이 외국 어선에 의해 유린되기 시작하였다. 즉 1882년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국이 황해·평안도 연안의 어업권을 획득하고, 한국도 중국의 산둥성과 봉천성 연안에서의 통어권을 획득했다. 한편 일본은 1883년 7월 〈조일통상장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전라·경상·강원·함경도 4도의 연안어업권을 획득한 반면 한국 어선은 肥前·長門·石見·出雲·대마도해안에서 어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어업의 실상은 외국으로 출어할 어선이나 어업기술 여건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다. 외국에 의한 어업침탈이 시작되었다.³⁴⁾

물론 唐船·荒唐船·어채당선 등으로 불리던 청국 선박은 평안·황해도 연안에 나타나 밀무역과 밀어를 자행하였지만 개항 후에는 수백 여 척의 선박이 들어와 서해안에서 주로 준치·조기·새우·갈치 등을 잡으면서 총포로 위협하여 한국인 어망의 생선을 약탈하거나 살상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본 어선은 삼포왜란으로 한반도 연해에서의 어로행위가 금지된 지 370여 년 만인 1883년에 어업권을 획득한 후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그렇지만 어업권이 인정된 초기에는 생선에 대한 기호상의 차이와 어획법 등이 달라 한국인 어업과 일본인 어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았다. 일본어민들은 초기에는 지역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많이 활동하였고, 점차 함경도와 강원

《日本外交文書》38-1, 문서번호 655 遼安金鑛採掘三國合同ニ對スル三井ノ態度ニ關スル件· 문서번호 675 遼安金鑛ノ特許條件ニ付請訓ノ件· 문서번호 677 遼安金鑛特許條件ニ關シ請訓ノ件.

33) 청·일 양국의 어민들은 이미 개항이전부터 한국 연해에 잠입하여 불법어로를 자행하였다.

이원순, 〈한말 제주도 漁探問題〉(《歷史教育》10, 1967).

박구병, 〈韓國漁業技術史〉(《韓國文化史大系》3,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68).

34) 한우근, 〈개항후 일본어민의 침투〉(《東洋學》1, 1971) 참조.

도까지 활동무대를 넓혀갔던 것이다.

일본어민들은 기계화된 漁具와 漁船 및 선진 어로기술로 한국어민에 비해 많은 양의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주로 도미·삼치·상어·방어·뱀장어·해삼·전복 등을 잡았는데 이들은 예상 밖의 수익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다. 1891년에는 117만 원의 수익을, 이듬해인 1892년에는 160만 원으로 그 수익을 늘려갔다.³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에서 일본어민으로부터 징수한 어세는 3천 원 정도에 그쳤다. 그나마도 일본어민들이 어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밀어를 행하는 사례가 많았으니 실제 일본어민들이 어획해 간 어류의 총량과 그들이 거둔 수익은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일본은 1889년 11월 한국정부와 〈朝日通漁章程〉을 조인함으로써 소정의 어업면허세를 납부하면 상기한 4도 연해의 3리 이내에서 자유로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잡은 어류를 개항장 거류 일본인과 한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수송 및 보관의 부담을 덜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어민들은 어로행위뿐 아니라 어류의 판매분야로까지 그 영역을 넓혀갔다.³⁶⁾ 일본상인들이 어류매매에 참여하게 된 이후 한국의 어물전 상인들은 상권을 잃고 도산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일본거류민들은 1889년 8월에 부산항에서 자본금 5만 원의 釜山水產會社를 창설하여 한국에서 어업 경영확대를 위한 기틀을 잡고자 하였다.³⁷⁾ 이 회사는 일본어민들의 각종 편의를 돕는 업무이외에 일본어민들이 잡은 어류의 판매를 앞선하였는데 심지어는 이를 청국으로 수출하는 중개역할도 맡았다. 이렇게 하여 일본어민들이 고기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연해에서 잡은 고기를 한국내의 판매는 물론, 청국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갔다. 그 결과 한국인은 어류의 생산분야는 물론 유통분야에서도 잠식당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기계화된 어구와 어선을 갖춘 선진적인 어법으로 한국어민보다 훨씬 많은

35) 이영학, 〈개항 이후 일제의 어업 침투와 한국 어민의 대응〉(《역사와 현실》 18, 한국역사연구회, 1995), 161쪽.

36) 《韓國水產誌》 1권(農商工部 水產局, 隆熙 2년), 368쪽.

37) 《統記》, 고종 25년 11월 20일 및 고종 28년 4월 27일.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일본인들은 1900년경부터 한국인이 좋아하는 조기·대구·청어·새우·명태 등을 잡아 판매함으로써 한국어민의 어업권을 침해하였다. 그들은 일본정부의 원양어업에 대한 장려금 지불, 어업협회·통어조합·수산조합 등의 조직 강화 등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1900년대에 더욱 적극 진출하면서 어획물의 판매에서도 생선·염장·건제 등의 방식으로 한국·청국·일본 3개국에 판매하여 많은 이득을 취하였다. 수심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일본인 잠수기선에 의한 전복과 해삼의 남획, 러시아인·영국인·일본인 등에 의해 성행된 노르웨이식 포경법에 의한 고래의 남획 등은 풍부했던 수산자원의 감소를 가져왔다.

일본어민들의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어로행위는 어민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였다. 1897년 8월에 부산 영사는 “통어자 가운데 3분의 2가 감찰을 받지 않은 자이며, 적어도 과반수는 규칙위반자로 보아도 좋다”라고 일본 외무차관에 보고하고 있다.³⁸⁾ 또한 일본어민들은 조약상에 허가되지 않은 지역까지 불법적으로 진출하여 어로행위를 자행하면서 수익을 올리려 하였다. 이를테면 1901년에 획득한 경기도 연해어업권을 빌미로 충청도 연안으로까지 밀어를 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황해도까지 진출하여 밀어를 행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이들의 불법은 어획에 그치지 않고 연해의 외딴 섬의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부녀자를 겁탈하거나 혹은 재산을 약탈하였고, 심지어는 그러한 불법적인 어로작업을 단속하는 관리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³⁹⁾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이러한 일인들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가 없었으므로 밀어선의 어업세를 확보할 수가 없음은 물론 한국어민들의 어로행위와 생계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였다.

때문에 한국어민들은 일본어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호소하는 한편, 나아가 직접 일본어민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즉 부산이나 충청도지역 어민 중에는 자본을 투자하여 일본 漁舟와 일본 漁具를 사용하는 자가 많았으며, 심지어는 일본의 漁艇을 소유한 자도 있었다. 한국어민 스스로가 일본어업의 침투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선

38) 박구병, 앞의 글, 253쪽.

39) 《皇城新聞》, 1902년 2월 24일 및 1903년 9월 11일.

진적인 어구와 어획법을 도입하여 경쟁해가기도 하였다.⁴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일본인 어민이 발달된 어구와 어획법을 바탕으로 한국 연해의 어장에 대한 침탈을 확대해 나갔던 것이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1년 경기도 연해의 어업권 취득에 이어 서 충청·황해·평안도 연안 어업권을 획득하여 한국 연해 전체에서 이익을 얻어갔다. 연안의 定置漁場·양식어장·패조류어장 등 어업면허를 취득하여 어로행위를 하는 어장은 농업에서 농토가 중요시되듯이 아주 중요한 생산수단으로서 토지와 다름없이 소유주가 있었고,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통감부에서 1908년 10월 〈漁業에 관한 協定〉을 한국정부에 강요하여 일인도 어업권을 획득하여 어장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¹⁾ 이어 일한 어민의 보호·단속이라는 미명하에 일본어민의 朝鮮海水産組合에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순라선을 구입하여 어업의 실권을 장악케 하였으며 한국어민에 대해서는 억압을 가하였다. 같은 해 11월 〈漁業法〉을 공포하여 면허어업(10년간), 허가어업(1년간), 신고어업(1년간)을 막론하고 통감부에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게 하였다.⁴²⁾ 이러한 법제는 모두 일인에게 유리하게 허가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였다. 우선 〈어업법〉을 공포한 후 1909년 4월에서 11월까지 허가된 수는 한국인이 5,436명, 일본인이 2,861명이었다. 그 해 어선수와 어획고를 살펴보면 어선수는 한국인이 12,567척 일본인이 3,755척이었고, 어획고는 각각 3,690,300원과 3,076,800원이었으며, 인원은 75,063명과 15,749명으로 양국의 어획고나 어선수로 보아서는 한국인이 다소 높지만 인원이 훨씬 많은 까닭에 1인 평균 어획고는 4분의 1에 불과하였다.⁴³⁾

1910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허가한 인원수는 한국인이 76,900명 일본인이 16,902명이었고, 1910년의 어선수와 어획고를 보면 한국이 12,749척에 어획량이 3,929,260원이었고, 일본이 3,960척에 어획량이 4,211,312원이었다. 일본인

40) 박구병, 앞의 글, 264~276쪽.

41) 外務省條約局, 《舊條約彙纂》 제3권.

42) 《朝鮮法令輯覽》, 朝鮮總督府, 1932.

43)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지배》(청아출판사, 1986), 115~116쪽.

어업에 비해 어업 인원과 어선수가 각각 4.5배, 3.2배인 한국인 어업이 어획고에서 약간 뒤떨어질 정도로 열악해져 갔다. 1908년부터 1910년의 어업상황을 보면, 한국인 어업은 일본인에 비해 배 1척 당 평균 어획고가 약 3분의 1, 1인당 평균 어획고는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였다.

일제는 통감부 설치이후 일본어민의 이주를 적극 권장하였다. 그리하여 1910년대 중반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1915년에는 전국에 걸쳐 이주 어민수가 1만 2천 명으로 증가하였다.⁴⁴⁾ 이들은 1904년 이후 한국의 전 연해 지역으로 어업영역을 확대해갔고, 또한 한국어민의 어획분야까지 침투하면서 어업을 행하였다.

〈李培鎔〉

3. 이권수호운동

1) 정부측 대응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한국은 근대화라는 과제와 함께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외래 자본주의의 경제적 침탈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한국의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저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국권을 상실하게 된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은 1876년 개항후 불과 30년도 채 못되는 동안 근대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대부분의 자원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광산이권 부분의 침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실로 막대하여 민족자본의 원천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이렇게 188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열강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부심하였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근대식 산업개발을 우리 스스로 담당하기 위한 새로운 부서의 설치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설치된 것이

44) 이영학, 앞의 글, 180~181쪽.

朝鮮電報總局과 鑛務局이었다.¹⁾ 우선 전선부문의 경우를 보면 1883년 일본과 〈釜山口設海底電線條款〉을 맺고 1885년에는 청과 〈義州電線合同〉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초기의 전선 가설은 타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전선 조약을 맺자 일본이 기득권을 요구하면서 이권 확장을 도모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이후의 전선 가설은 스스로 담당해야 할 것임을 각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가설된 것이 경부간 남로전선이다. 1887년 이를 관장하기 위한 조선전보총국이 창설되었고 다시 청과 〈中國允讓朝鮮自設釜山之漢城陸路 電線議定合同〉을 체결함으로써 명실공히 남로전선은 한국정부의 주관 아래 독자적인 전선 가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광업의 경우도 이 시기 일본·영국의 기술자들이 한국 광산에서 무단 채굴을 빈번히 자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1887년 4월 광무국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私探, 세금 체납, 외국인 채광으로 어수선하던 광무의 정리를 단행하였다.

철도의 경우도 경부철도 부설권을 환수하여 西北鐵道局을 설치하였던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大韓鐵道會社의 朴琪淙·鄭顯哲·洪肯燮 등은 1903년 5월 서북철도국 총재 李容翊에게 경의철도 부설공사 일체를 이 회사에 전임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일본으로부터 4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막후교섭을 벌였다. 결국 1903년 7월 서울~평양의 철도 건설을 대한철도회사에 맡긴다는 칙령이 내려졌다. 8월에 서북철도국과 대한철도회사 사이에 체결된 〈大韓鐵道會社全擔協定〉에 의하면 서울~개성의 철도 부설권은 대한철도회사가 전임하고 모든 공사대금은 준공 후에 철도국으로부터 급여하되, 그것을 전부 급여할 때까지는 철도의 운영권을 회사가 소유하며 평양~의주의 철도는 차후에 다시 협정키로 하였다.²⁾ 이로써 서북철도국은 명목상의 감독관청으로 전락하고 서울~평양간 철도부설권은 대한철도회사가 장악하게 되었다. 1903년 9월 제일은행의 綱戶得哉와 대한철도회사 사이에 철도부설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해 주는 내용의 〈京義鐵道借款協定〉

1) 《高宗實錄》, 고종 24년 4월 5일.

2) 鄭在貞, 〈京義鐵道の敷設과 日本의 韓國縱貫鐵道 支配政策〉(《論文集》 3, 한국방송통신대학, 1984), 480쪽.

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은 경의철도 부설권과 운수영업권을 장악하였다. 결국 경의철도의 자력 부설운동은 좌절되었다.

둘째, 1880년대는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도입과 계약 체결을 되도록 삼가하였다. 당시 한국의 상황이 근대화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갖추어지지 않아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어 근대 산업을 개발하기에는 시기상조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뜻에서 단지 외국인 기술자를 초빙하여 기술 개발을 통한 소극적인 근대화정책에 머물게 되었다.

셋째,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한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자 열강의 세력균형에 의해 이를 저지하고, 나아가서는 이미 탈취된 이권도 환수하는 데 주력하였다. 예를 들면 1895년 삼국간섭에 의해 일본의 이권독점이 좌절되었고 이에 1896년에는 청·일전쟁 중 일본이 차지하였던 西路·北路電線을 환수할 수 있었다. 또한 1895년 미국과 체결한 운산금광 특허권도 한때 파기할 뜻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1896년 아관파천으로 러시아가 한국에서의 세력을 확보하여 수많은 이권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 독립협회에서 이를 맹렬히 공격하여 일부를 저지시킬 수 있었다. 이에 프랑스에게 넘어갔던 경의철도 부설권도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넷째, 189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 열강들이 최혜국 조관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이권침투가 본격화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권교섭의 모든 권한을 궁내부로 이속시켰다. 즉 빗발치는 그들의 요구를 막아내기 위하여 왕실 관리로 교섭창구를 단일화시키고 국내의 철도·광산 등의 이권을 외국인에게 허가하지 않을 방침을 공표하였다. 광업부문의 경우 매장량이 많다고 알려진 광산은 모두 궁내부로 이관하여 보호하였다.³⁾ 또한 “궁내부 광산은 외국인에게 채광을 불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되면서 실업교육 기관을 설치하였다. 이른바 1900년 4월에 <鑛務學

3) 宋炳基 外, 《韓末近代法令資料集》2(國會圖書館, 1971), 광무 2년 1월 12일, 奏本 國內 鐵道·鑛山の 外國人 合同을 勿許하는 件 및 광무 2년 6월 28일, 奏本 43郡 各鑛을 宮內府에 移屬하는 件.

校官制), 같은 해 11월에 〈電務學徒規則〉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전선·광업 기술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⁴⁾

이러한 이권침탈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소극적인 대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지만 독립협회나 언론을 통한 지식인들의 이권양여 반대운동으로 더욱 고무되었다.

2) 언론 및 지식인의 이권양여 반대운동

외국인에 대한 이권양여 반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는 독립협회의 활동이 활발하던 때였다. 왜냐하면 1896년 이후 한국의 근대시설과 자원개발을 위한 주요 이권이 아주 값싼 조건아래 차례로 열강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립협회의 이권양여 반대운동은 이권침탈의 대응방안과 반외세 논의가 전국적으로 여론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측 대응이 국력의 위축으로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운동은 보다 더욱 강경하고 신랄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여하튼 이권침탈을 막기 위한 지식인들의 대처방안은 언론과 만민공동회를 통한 여론화운동, 교육을 통한 자체기술자 양성, 민족자본에 의한 회사설립 등으로 제시되었다. 독립협회의 주장은 나라의 자주독립은 자주경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자국의 자원과 산업은 자기가 개발하여야만 자주독립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의 자원과 국토와 경제적 이권을 외국에 양도하는 것은 자주독립의 일보를 떼어주는 것이라고 보고 한사코 이를 반대하였다.⁵⁾

이러한 여론 조성과 함께 독립협회는 정부의 반대 태도가 확고하지 못하자 “만일 외국이 청구하는 대로 다 시행하면 인민은 어디가 살며 나라는 무엇을 가지고 나라노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서를 外部에 제출하여 자각을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침탈당한 이권과 그 관계자를 조사하고

4) 宋炳基 外, 위의 책, 1900년 9월 4일, 勅令 제31호 鑛務學校官制.

《通信院本文》1, 1900년 11월 1일, 通信院令 제7호 電務學徒規則.

5) 慎鋪廈, 《獨立協會研究》(一潮閣, 1976), 150~151쪽.

즉각 중지시킬 것을 결의하였다.⁶⁾

그런데 외세에 대한 이권양여 반대 논의가 항상 일관적으로 단순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현실론과 이상론의 이중 갈등속에서 전개되었다. 즉 첫째는 무계획한 근대시설 개발로 인한 폐단을 지적하며 시가지 상조론이 대두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근대시설의 필요성과 조속한 개발을 주장하는 측이 있었고, 둘째로는 이권양여 절대 불가론과 일부에서는 이권양여의 효용성을 주장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부정의 논리는 반외세·친외세의 대립적 성향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근대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인식과 방법론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들을 비롯한 국민의 여론은 외국인의 이권침탈에 대한 분노가 대단하였다. 《독립신문》뿐 아니라 《皇城新聞》에도 정부의 속수 무책인 무능함과 외국의 이권침탈을 맹렬히 공격하는 기사가 실리고 있다.

독립협회에 의하면 나라의 자주독립은 자주경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자국의 자원과 산업을 자기가 개발하여야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자원과 국토와 경제적 이권을 외국에 양여하는 것은 자주독립의 일부를 양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한사코 이를 반대하였다. 즉 외국에 의존하지도 않고 배척하지도 않고 오직 친선해야 하지만 권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1898년 3월 6일 토론회의 주제를 이권양여 반대로 정하여 “大韓國의 토지는 선왕의 가장 크신 업이요, 1천 2백만 인구가 사는 땅이니, 한 자와 한 치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이는 곧 선왕의 죄인이요, 1천 2백만 동포 형제의 원수”라 하여 열강의 이권침탈을 강력히 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였다. 특히 독일이 金城 堂峴金鑛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독일영사 클리인(F. Krien, 口麟)이 그의 요청을 거부하는 우리측 외부대신 서리 兪箕煥에게 무례한 언동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글을 계속 신문에 게재하였다. 이에 클리인의 행위를 규탄하는 여론이 빗발치듯 일어났고, 결국 클리인은 내방 면담시 무례행위에 대한 사과문을 외부대신 서리 유기환에게 보내게 되었다.

6) 《독립신문》, 1898년 9월 13일.

독립협회의 완강한 이권양여 반대운동에 힘입어 이전에 침탈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단 저지되었다. 또한 1898년 10월 28일 官民共同會를 개최하고 회원들이 각각 의견서를 진술한 다음 11개조의 결의안을 성안하였다. 이중에서 6개조를 綱으로 하여 入奏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광산과 철도와 石炭과 삼림과 빗 얻어 쓰는 일과 군사비는 정부대신들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하여 도장을 찍지 않으면 외국과 조약이 수립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한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외국인을 무조건 경계하여 풍부한 자원을 그대로 무한정으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외국자본을 이용해서 부강에 힘쓰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처사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지식인들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들을 비롯한 국민의 여론은 외국인의 한국 광산침탈에 대한 분노가 대단하였다. 국내 산업이 한국인보다 외국인에 의해 착수되는 것이 더 많음을 우려하였다. 이미 당시의 여론은 계속 외국인에게 광산·삼림 등의 권리를 준허하고 토지를 양여하면 결국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길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황성신문》에도 정부의 속수무책인 무능함과 외국인의 이권침탈을 맹렬히 공격하는 기사가 자주 실리고 있다.

1904년 3월 당시의 지식인을 대표하여 장지연 등이 정부에 시정개혁에 관한 50조를 건의하였는데, 그 중에는 이미 인허한 외국인의 이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이 때는 일본인들이 한국에게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여 그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있었다. 같은 해 7월 당시 지식인들과 민간실업가들에 의해 개간사업과 광업 전반을 직접 한국인 스스로가 담당할 農鑛會社 설립을 추진하였다.⁷⁾ 아울러 輔安會를 결성하고 격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결국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는 철회되었다. 1905년 통감부가 설치되자 유생들의 항일 의병운동이 고조되면서 전국의 유생들은 각국 외국공사관에 서한을 보내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만국공법으로 제재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⁸⁾

점차 언론이나 지식인들의 이권양여 반대 논의는 시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구체화되었다. 신문에 투고하는 층도 각 지역의 광범한 계층으로 확대되고

7) 尹炳奭, 〈日本人의 荒蕪地開拓權 要求에 대하여〉(《歷史學報》22, 1964).

8) 《大韓每日申報》, 1905년 9월 26일.

있었다. 이로 인해 민족의식을 각성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이론적 한계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자체적인 학술조사나 경제이론이 결여된 한계성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열강의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을 국민에게 감지시키고 또한 저항운동을 조직화·집단화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3) 현지민의 저항

지식인들의 반대운동이 주로 이론적인 면에 치중하였다면 현지민들의 대응은 생업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무력충돌까지 야기될 정도로 적극적이고 강력하였다. 대체로 현지민들의 저항은 1890년대 이후 열강의 이권침탈이 가중될 때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현지에서의 저항은 시설 파괴, 고용 거부, 기존 생업권 보장요구, 토지배상 반대, 고용임금 인상요구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청·일전쟁 개전 이후 일본이 한국의 電信을 장악하고 그들의 군용전선을 가설하자 현지민들의 저항은 격렬하였다. 일본 전신망 파괴공작은 전선의 절단과 전공에 대한 활동 저지로 나타났다. 즉 전선을 가설하는 일본인 전공을 투석으로 살해하거나, 여인숙에서 숙박을 거절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정부간 군용전선은 개통할 단계에 절단 사태가 발생하여 개통을 하루 이틀 지연시켜야만 하였다.⁹⁾

특히 전선사고는 1894년 9월 이후에 더욱 빈번히 일어났는데 이는 동학군의 재봉기와 관련이 있었다. 전주~강진간, 전주~군산간의 호남선 가설계획이 중지된 것도 반일봉기가 활발해져 일본 병참부 및 일본 전신선을 습격한 데도 원인이 있었다.¹⁰⁾

한편 일본은 한국정부에 대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도록 경비 강화를 독촉하였다. 뿐만 아니라 절단에 대한 밀고를 장려하여 상금을 주거나 전신 연변의 촌락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워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9) 《日案》3, 문서번호 3183 京釜間 日軍電線 切斷犯의 嚴懲과 常時防護 要求.

10) 《高宗實錄》, 고종 31년 9월 19일.

그러나 전신 습격은 조금도 기세가 누그러들지 않았으며 결국 이러한 현지 민들의 저항과 한국정부의 반환요구로 서로·북로전선은 1896년 7월 환수되었다. 그러나 정부 군용전선은 계속 일본이 점거하였다.

광업의 경우 외국인들이 특허를 받은 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많은 토착 광업권자들이 채금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많은 자본을 투자하였는데 갑작스러운 외국인들의 침입으로 채금작업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심한 반발을 하였다.

영국이 차지한 殷山金鑛이나 일본의 稷山金鑛은 정식으로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인 무력침탈을 자행하였다.

영국인들의 불법침탈에 대해 은산군수는 무단 채굴행위를 중지하라는 정부측 의사를 전달하고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砂金 채취작업을 하는 한국인 토착광부들을 독려하였다. 영국인에 의해 일터를 빼앗긴 한국인 광부들은 영국인들이 고용한 인부들이 주로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배일감정까지 겹쳐 더욱 저항의식이 고조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영국인이 한국인 광부감리를 납치해 갔다는 소문이 퍼지자 즉시 그 일대 수천 명의 한국인 광부들이 집결하여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끝내는 총격전까지 벌어져 은산군 일대는 전쟁터나 다름없는 무법지대로 화하였다.¹¹⁾ 한국정부측에서도 사태의 악화를 우려하여 진위대 100명을 급파하여 광부들을 해산시키고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즉 고용인의 10분의 9를 한국인으로 한다는 것과, 원래 채광작업에 종사하던 한국인 토착광부들에게 1년의 여유를 주어 잠정적으로 채굴권을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다.

일본이 차지한 직산금광의 경우에서도 영국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즉 영국과 똑같은 경로를 밟아 “먼저 채굴을 강행한 다음 특허권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일본인들은 항상 그 지역의 토착광부를 매수하여 한국인 광부 사이를 이간시키는 작전으로 간교하게 한국 광산에 침투해 들어갔다. 원래 직산금광에는 1900년경에 이르러서는 1만여 명의 광부가 채광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주로 영남과 평안도 광부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채굴작업

11) 《平安南北道來去案》(奎 17988-4), 1900년 2월 20일·22~24일.

을 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인들은 영남인 광부들의 광지를 매입하여 자본주가 되어 불법으로 광지 확장을 감행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한국인 광부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결국 평안도 광부들과 인근 주민들의 항일감정이 폭발하여 무력충돌이 야기되었다. 그것은 일본인을 후견인으로 하여 작폐를 일으켰던 買辦 덕대와 일본인에 대한 지역민들의 폭발적인 저항이었다.¹²⁾

한편 합법적으로 특허 계약을 맺고 채굴하는 경우에도, 기존 광업권에 대한 배상문제라든가, 토지보상문제, 고용임금문제 등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마찰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예를 들면 운산금광이나 당현금광의 경우 기존 광업권에 대한 배상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토착광부들이 집단으로 상경하여 外部에 항의하기도 하였고 현지에서는 고용거부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¹³⁾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군수의 지휘하에 임금인상을 위한 집단파업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외국인들에게 계란·닭 등 생활필수품을 팔지 않는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실력 저항운동뿐만 아니라 각 광산에서는 민족자본에 의한 자활의 방도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것은 거대한 외국인 자본의 침투에 대항하려는 민족자본의 결집운동이었다. 遂安金鑛의 경우 토착 광업권자들이 자본을 모아 수안금광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일본인들이 설치한 시설·기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 그들을 축출할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¹⁴⁾ 이외에도 각처에서 합자회사가 설립 운영되었다. 또한 각 광산촌 유지들이 자본을 모아 기술자 양성을 위한 근대식 광업교육학교를 설립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광산촌에서 일어났던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에 의한 철도부설 과정은 그 자체가 방대한 토지와 물자 및 노동력의 수탈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저항 역시 치열하였다.

일본은 경부·경의철도를 부설하면서 선로와 정거장 부지로서 총 2,000만 평에 달하는 토지를 시가의 10분의 1 내지 20분의 1에 해당하는 저렴한 가

12) 《宮内府案》(奎 17801), 광무 4년 6월 28일.

13) 《平安北道來去案》(奎 17988-4), 1897년 6월 28일 및 10월 25일.

14) 《黃海道遂安金鑛章程》(奎 18977), 1903년 8월.

격으로 약탈하였다. 일제가 철도부지를 이처럼 광대하게 확보한 것은 경부·경의철도를 한국 침략과 대륙 진출을 위한 동맥으로서 건설한다는 목적 이외에도 철도연변을 일본의 농민과 상인의 집단 이주지역으로 재편성하겠다는 강력한 식민 의지가 숨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과 평양의 도시민 및 沿線의 농민들은 청원과 집단시위 등의 방법으로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철도건설 노동자의 장기간에 걸친 대량 동원은 철도 연선지역을 극도로 피폐시켜 폐농현상이 심각하였다. 농민의 강제 동원으로 때를 놓쳐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속출하였고 철도재료 운반을 위한 소와 말 등 가축의 징발도 행해져 농사가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반면 철도연선에의 일본인의 입주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철도연선의 영등포·수원·밀양·구포·대구지역에는 일찍부터 일본인 부락이 건설되었다.¹⁵⁾

자력으로 철도부설이 곤란했던 한국정부는 철도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철도의 경영에 공동참여하고 규정된 기한이 지난 후 철도를 매입하고자 하였다. 특허회사에 일정기간 영업권만을 인정해 주고 궁극적인 소유권은 한국정부가 갖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¹⁶⁾ 그러나 일본은 철도용지의 무상 수취라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 광대한 철도부지를 확보한 후 정거장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철도 연선을 한국에 대한 군사, 경제적 침략기지로 육성하고자 하였다.¹⁷⁾ 일본측의 광대한 철도부지 요구에 대해 한국정부는 선로 부지와 정거장 용지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본측과 교섭을 계속하였다. 광대한 철도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컸으므로 한국정부는 1896년 금후 1년간 외국인에의 철도 합동을 불허하였다. 결국 남대문정거장 부지는 51,819평, 영등포정거장 41,000평, 초량정거장 50,000여 평, 부산진정거장 30,000평, 그 외 군소 정거장은 각 30,000평으로 합의하였다.¹⁸⁾ 선로의 모든 구간은 단선철도로 건설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폭 18m의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¹⁹⁾

15) 鄭在貞, 앞의 글, 234쪽.

16) 朴萬圭, 〈韓末 日帝의 鐵道敷設支配와 韓國人 動向〉(《韓國史論》8, 서울대 국사학과, 1982), 250쪽.

17) 鄭在貞, 앞의 글, 167쪽.

18) 朝鮮鐵道史編纂委員會, 《朝鮮鐵道史》1(朝鮮總督府 鐵道局, 1937), 667~671쪽.

경의철도는 군용철도로 전쟁기간 중에 부설되었으므로 부지 수용의 규모와 수용방법에 있어 더욱 약탈적이었다. 한일의정서에 의해 일본은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隨機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경의선·마산선을 군용철도로 지정함으로써 부설에 필요한 부지를 군용목적의 철도용지로 수용할 수 있었다.²⁰⁾ 경부철도의 경우는 일본이 제공한 차관으로 한국정부가 토지를 매수하는 형태였으나, 경의철도의 경우는 일본정부가 헐값으로 직접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²¹⁾ 일본군이 매수하려던 군용 철도용지는 경의선·마산선·경원선을 포함해 1,795만 평에 달하였다. 특히 용산정거장 45만 평, 평양정거장 73만 평, 신의주정거장 105만 평, 각 정거장 당 72,060평이라는 광대한 부지를 요구하였다.²²⁾

일본의 방대한 철도부지 요구는 한국인의 민심을 자극해 집단적인 저항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더욱이 철도부지에 들어가는 토지는 대부분 일반인의 사유전답이었으므로 부지 수용과 보상비의 지급문제를 둘러싸고 분규가 발생하였다. 한국정부가 제시한 보상가액이 평당 17전이었으나 실지 보상액은 시가의 2분의 1내지 5분의 1에 불과한 평당 7.6전이었으므로 한국인의 반발이 강력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거의 무상으로 철도부지를 약탈하였다.

토지를 빼앗긴 주민의 저항은 강력하여 平壤外城民 4~5천 명이 會集하여 관찰부로 물려가 평안남도 관찰사와 담판을 벌이기도 하고,²³⁾ 남대문정거장에정지 주민 수백 명이 가옥·분묘의 철거에 반대해 한성부에 물려가 호소하기도 하고²⁴⁾ 정거장을 용산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하였으나²⁵⁾

19) 鄭在貞, 앞의 글, 175쪽. 일제는 경부 철도용지로 선로용지 319만 2천 평, 정거장부지로 127만 3천 평(각 정거장당 2만 9천 평) 도합 484만 5,741평을 수용하였다.

20) 朴萬圭, 앞의 글, 252쪽.

21) 일제는 경의선 부설에 착수하면서 필요한 地段에 대해서는 개인의 건축물을 훼손 이전하는 데 대한 배상만을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그 소유주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 보상없이 수용하여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朴萬圭, 위의 글, 263~264쪽).

22) 鄭在貞, 앞의 글, 183쪽. 일본측은 최종적으로 각 정거장 당 15,892평을 확보하였고 용산은 50만 평, 평양은 35만 평, 신의주는 62만 평을 확보하였다.

23) 鄭在貞, 위의 글, 208쪽.

24) 鄭在貞, 위의 글, 172쪽.

주민들의 요구는 묵살되었다. 결국 철도연선의 주민들은 방대한 토지와 가옥을 상실하고 강제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철도건설에 대한 한국인의 방해와 공격이 행해졌다. 이러한 반철도투쟁은 의병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1904년 7월 이후 서울·경기도·평안도 지역에서 일본의 불법적인 군용지·철도용지 수용과 몰자·재료의 징발 및 노동력 수탈에 저항하는 의병이 봉기해 일본군과 총격전을 벌이고 철도와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일진회원을 공격하는 사건이 빈발하였다.²⁶⁾ 대표적인 사건으로 1904년 8월의 경부철도 연선의 시흥군 주민 1만여 명의 봉기와 경의철도 연선의 곡산군 주민의 봉기를 들 수 있다.²⁷⁾ 이들 봉기는 강제적인 노동자 동원과 이에 편승한 지방관의 수탈 및 저렴한 임금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05년 경부철도의 영업 개시이래 즐기차게 전개된 연선 주민들의 철도에 대한 저항은 열차 통행의 방해라는 소극적 행동에서부터 정거장의 습격 파괴라는 적극적인 행동까지 다양하였다. 달리는 기차에 투석을 한다거나, 철도선상에 바윗돌을 장치하여 열차를 전복시키고 철도연변의 전신주를 파괴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²⁸⁾ 이것은 철도의 부설과 그 운수가 다름아닌 한국민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연선 주민들의 분노의 표시였다.

경의철도 선로에 대해서도 파괴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연선 주민들과 의병들의 철도 공격 중 상징적인 것은 철도 정거장의 공격과 파괴였다. 철도 정거장이야말로 일제의 한국지배의 거점이자 수탈의 창구였으며, 일본인의 대량 이주로 한·일 양국민의 갈등과 대립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한일합병 때까지 연선 주민들과 의병의 공격을 받고 파괴 또는 소실된 철도 정거장은 경의선의 一山驛, 경부선의 小井里驛·若木驛·伊院驛 등인데, 공격미수로 그친 곳은 수없이 많았다.²⁹⁾ 이와 같이 철도연선 주민들

25) 朴萬圭, 앞의 글, 256쪽.

26) 鄭在貞, 앞의 글, 243쪽.

27) 鄭在貞, 위의 글, 249~253쪽.

28)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5·13·30일 및 9월 24일.

29) 《大韓每日申報》, 1907년 9월 10·14일.

과 의병들에 의한 열차운행의 방해와 철도역에 대한 공격은 한국인들의 생존권 투쟁임과 아울러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무력 항일투쟁이었다.

이와 같은 현지 관리와 현지 주민, 철도·전선연변의 주민, 철도역부, 광업 종사자의 생존권 수호투쟁은 나아가서는 민족보존 의식으로 성장하였고 민족운동의 한 역량을 갖추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한편 1883년 〈조일통상장정〉 체결 이후 일본어민의 通漁가 활발해지자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던 한국어민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청, 특히 일본어민들은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통상장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어로행위를 하거나 소정의 어업면허세조차도 내지 않으려고 불법 密漁를 행하거나 심지어 한국어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생명을 빼앗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관들은 일본어민의 불법 어로를 제대로 단속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발생하면 일본영사의 재판에 맡기게 한 규정에 따라 고작 일본영사관에 항의하는 정도였고 범법자를 체포하여 단속하는 일은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외국 어민의 불법 어로와 침탈은 더욱 횡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많은 일본인들이 免狀(면허장)없이 불법적으로 출어하였고, 한국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어장에서 고기잡이를 하여 방해하거나 어장 등을 훼손하고 우월한 어구와 어법으로 전복 등을 모조리 잡아 종자가 멸종될 지경에 이르게 하기도 하였다.³⁰⁾

더구나 일본어민들은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어서 부녀자들이 함께 조업하는 곳에서까지 꺼리지 않고 나체로 어로작업을 하는 것은 물론 연안의 촌락에 들어가 물품을 구입할 때에도 나체로 다녀 한국인의 혐오감과 경멸을 사는 등 풍습을 해쳤다.³¹⁾

이러한 일본어민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한국어민과 일본어민 간에는 상호갈등과 충돌이 끊임없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내륙의 한국어민들조차도 출어가 금지된 곳이었으나, 일본어민이 어업을 행하기 시작하자 제주도어민

30) 이영학, 〈개항이후 일제의 어업침투와 한국어민의 대응〉(《역사와 현실》 18, 한국역사연구회, 1995), 164쪽.

31) 《通商彙纂》 2호, 明治 26년 1월호.

들이 타격을 크게 입었으므로 갈등이 더욱 심하였다. 1883년이래 제주도어민들은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1884년에는 統理衙門에 일본어민의 조업을 금지시켜 달라는 집단적 상소문을 올리는 등 수시로 중앙정부에 일본어민의 출어를 금지시켜 줄 것을 청원하였다. 1890년 5월에는 제주도에 일본어선 100여 척이 떼를 지어 상륙해 민가 약탈, 부녀자의 겁탈, 관리·민간인의 살상 등을 일삼는 일본어선의 횡포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목재와 물의 공급을 거부하고 대항하였다. 또한 제주도민은 수차에 걸쳐 집단으로 상경하여 조정에 상소를 올려서 일본인의 만행을 규탄하였으며, 정부에 대해서 일본어민의 제주도 통어를 완전히 금지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³²⁾ 제주도민들은 통어 금지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자 1891년 3월 정부에서 현지 실정을 조사하도록 파견한 巡審官을 습격하여 구타하고 내쫓는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한국어민들은 일본어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호소하는 한편, 나아가 직접 일본어민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즉 부산이나 충청도지역 어민 중에는 자본을 투자하여 일본 漁舟와 일본 漁具를 사용하는 자가 많았으며, 심지어는 일본의 漁艇을 소유한 자도 있었다. 한국어민 스스로가 일본 어업의 침투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선진적인 어구와 어획법을 도입하여 경쟁해가기도 하였다.³³⁾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일본인 어민이 발달된 어구와 어획법을 바탕으로 한국 연해의 어장에 대한 침탈을 확대해 나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제주도어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일본은 군함을 파견하여 연해의 섬을 순시하면서 무력시위를 행하여 한국인에게 위압감을 주어 진압하기도 하였다.³⁴⁾

〈李培鎔〉

32) 박구병, 〈韓日近代漁業關係〉(《부산수산대학 연구보고》 7-1, 1967) 참조.

33) 박구병, 〈韓國漁業技術史〉(《韓國文化史大系》 3,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68), 264~276쪽.

34) 이영학, 앞의 글.